

KOSCA LETTER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뉴스레터



2023 Vol. 35

| KOSCA MESSAGE

| KOSCA NEWS

| KOSCA INFO

| KOSCA TODAY

| KOSCA TOGETHER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창의력의 힘

넘실대는 해운대 바다의 물결,
달맞이 언덕의 소나무 가지,
아랍의 문자를 모티브로
구조적 미학을 살렸다.



표지이야기 오션어스아트홀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 KOSCALETTER Vol.35

발행인 | 회장 김세원
기고/투고 | kosca21@kosca.or.kr
편집/발행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디자인/제작 | CCA (051. 647. 5991)
사진제공 | CCA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더욱 강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김 세 원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회장

존경하는 전문건설인 여러분!

2023년의 새날을 여는 계묘년(癸卯年)의 해가 밝았습니다.
칠혹의 어둠을 밀어내고 떠오르는 새 해를 바라보며,
여러분의 앞날에도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팬데믹의 공포에서 조금씩 벗어나며, 일상으로의 회복을 꿈꿀 때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시작된
세계경제 불황과 높은 인플레이션은 우리의 일상을 더욱 뻘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2023년을 바라보는 대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은
대한민국 경제가 저성장과 고물가시대의 늪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경기부진으로 인한 가계부채의 부담 증가와 높아진 금리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 전문건설인들은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쌓아올리며,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내 왔습니다.

작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의 대표선수들은 모두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 16강에
당당히 진출했습니다. 16강 진출을 확정 짓는 그 걱정적이고 감격스러운 순간,
태극기에 새겨진 ‘꺾이지 않는 마음’이란 글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새해를 맞는 지금,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대표선수인 전문건설인들의 가슴 속에도
이러한 마음이 새겨져, 그동안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슬기롭게 이겨내 온 것처럼
한결같은 마음으로 더욱 강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계묘년, 토끼의 영민함과 민첩함으로 새로운 환경에 발빠르게 대처하며,
한 발짝 더 나아가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길 바라며,
늘 건강하고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전문건설인 여러분! 2023년 희망찬 계묘년 새 아침이 환하게 밝았습니다.

윤 학 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

전문건설인 여러분!

2023년 희망찬 계묘년(癸卯年) 새 아침이 환하게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전문건설인 모두가 더 크게 발전하고, 목표하시는 바 모든 것을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협회도 여러분께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전문건설 가족 여러분!

지난해 우리는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건설자재 및 유가의 고공 행진 등 불안정한 국제적 환경 속에서 건설업 상호시장 개방의 불균형, 건설공사비 급상승의 충격, 안전 관련 규제의 강화 등으로 그 어느 때와 비교할 수 없는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정부의 재정기조가 건전으로 전환되며 SOC 투자예산을 10% 감소 편성하는 등 녹록하지 않은 환경이지만, 부동산 규제 완화 시그널과 금리인상 속도의 둔화 분위기 등 긍정적 요인도 상존하고 있어 우리 전문건설업계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리스크 관리'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전문건설인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업계를 둘러싼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고 반전의 기회를 만들어야 하는, '위기가자 기회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협회는 최우선적으로 전문건설 원도급 보호구간 확대와 지역 전문건설업체 수주 활성화 등 건설산업 상호시장 개방으로 무너진 업역 회복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동시에 불합리한 하자담보책임 절감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 관철에 애쓰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성 있는 개선을 통해 과도한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건설현장 노조의 불법행위 근절과 노동생산성 향상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일하기 편한 건설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2023년 협회는 '할 수도 있다'가 아닌 '해야만 한다'는 절박함으로 보다 빠르게 현실을 진단하고, 보다 더 큰 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성과를 향해 도전해 나가겠습니다. 전문건설인 여러분께서도 신뢰와 성원을 보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예로부터 지략(智略)을 상징하는 검은 토끼의 해입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에는 우리 전문건설업계가 하나 된 마음으로 산적한 난제들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면서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시 한 번 전문건설 가족 여러분의 가정과 현장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위해 전문건설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박형준 부산광역시 시장

존경하는 부산 전문건설인 여러분!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동안 부산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는 여러분의 희망과 꿈이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우리 지역 건설업계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시(市)는, 건설업은 지역경제를 움직이는 기반 산업이고 시민 일자리와도 직결되는 만큼 위축된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원도심 등 노후 불량주거지의 정비사업 활성화 일환으로 건축물 노후도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였고, 각종 사업의 신속한 인허가를 위해 위원회 수시 개최, 운영방법 개선 등 불필요한 규제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침체된 주택건설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단축,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등도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市)는 2023년 국비 8조 5,000억 원을 확보하여 부산엑스포 유치(254억 원), 엑스포 핵심 인프라인 가덕신공항(130억 원)을 비롯하여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784억 원), 하단-녹산 도시철도(367억 원), 남부내륙철도(1,786억 원), 오륙도 트램(17억 원) 등 지역발전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주요 사업예산을 확보함으로써 부산 도약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설업계의 이야기를 귀담아듣고

전문건설인들의 어려운 부분은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문건설인 여러분! 올해는 '2030 세계박람회' 개최 도시가 결정되는 해입니다.

우리 부산시가 개최 도시로 결정된다면 총사업비 규모 약 5조원, 생산유발효과 43조원, 고용창출 50만 명 등 부산 건설업은 다시없는 기회를 맞이할 것입니다.

부산시장으로서 우리 모두의 염원인 '2030 세계박람회'가 부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묘년(癸卯年) '검은 토끼의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토끼는 새끼를 낳을 때 여러 마리를 낳는다고 해서 번창, 풍요를 상징합니다.

새해에는 전문건설인 여러분의 사업이 더욱 번창하고 풍요로운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힘 모아, 부산 대도약의 역사를 개막합시다!

안 성 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존경하는 전문건설인 여러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삶에 희망의 기운이 가득하고 각 가정에도 행복한 웃음이 활짝 꽃피기를 기원합니다.

희망의 새해가 밝았지만 안타깝게도 주택건설업계의 전망이 그리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원자재값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비용 부담이 급증한 데다 주택경기 하락으로 분양시장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유동성 위기 또한 잠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건디면 반드시 기회가 온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지역 경제를 이끌어온 빛나는 등대였던 지역 건설업계의 열정과 투지가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다시 바꾸어 낼 것이라 기대합니다. 부산광역시의회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의회도 제9대 의회 출범 2년 차가 되는 2023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더욱 결연한 각오로 민생경제 회생에 최선을 다하고 먹는 물과 원전 등 생활 안전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불안감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인재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도 올해 안에 확정될 수 있도록 견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문건설인 여러분!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도시 선정이 11월로 임박했습니다.

2030세계박람회는 '세계의 부산'으로 우뚝 서는 다시없는 기회입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여러분께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힘을 모아 주십시오.

2023년 가슴 뛰는 부산 대도약의 역사를 개막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계묘년(癸卯年)의 힘찬 기운과 더불어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의 번창과 모든 회원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지혜를 모아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

다사다난했던 임인년(壬寅年)을 보내고,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검은 토끼띠 해의 지혜로운 기운을 맞아, 부산전문건설인 여러분들의 원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지역 건설업의 발전과 새로운 건설문화 창조를 위해 앞장서주신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김세원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회원사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985년 설립된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는 급변하는 건설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전문건설사업자의 권익 신장과 일감 확보를 통해 부산경제 활성화는 물론,
대한민국 건설산업 발전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건설사업자 간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며, 정부 및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건설산업 관련 제도 개선 및 전문건설 기술 향상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지역 건설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속된 코로나19와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교육 환경 개선과 저소득층 학생을 돕기 위한 교육 메세나 활동을 펼치며,
아이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건강하고 안전한 친환경 교육시설을 구축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회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난 한 해, 새롭게 개원한 '부산학력개발원'을 중심으로, 제대로 가르치고 배우는
공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기반을 든든하게 다질 수 있었습니다. 새해에도 학력 신장, 인성교육,
미래 교육을 핵심 정책으로, '행복한 학교, 성장하는 학생'의 꿈을 향해 힘차게 달려갈 것입니다.
부산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부산교육의 든든한 동반자인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계묘년(癸卯年) 새해는, 우리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의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사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회의 및 행사

01 부산시회 - 한국건축시공학회 기술자문 및 협력증진 업무협약 체결

부산시회(회장 김세원)와 한국건축시공학회(회장 임남기)는 10월 11일(11:30/부산시회 회의실) 건설관련 신기술 등 시공기술의 발전과 회원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자문 및 협력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부산시회 회장단과 한국건축시공학회 임남기 회장, 이동운 이사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협약의 주요내용은 학회는 부산지역 전문건설사업자의 건축시공 관련 신기술 개발 및 특허 취득을 위한 기술자문 및 공동연구에 협력하고, 부산시회는 학회의 건축시공 관련 신기술·특허에 대한 보급 확산과 건설현장 적용을 위한 회원사 정보제공에 협력하는 것이다.

이날 부산시회 김세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원사들이 그동안 시공효율과 품질향상, 원가절감 등을 위해 축적해온 다양한 시공기술과 기능들이 오늘 업무협약을 통해 신기술 및 특허 등으로 개발되어 빛을 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국내 건설산업과 시공기술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했으며, 한국건축시공학회 임남기 회장도 “양 기관의 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여 협약내용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자”고 답했다.





02 2022년 부산전문건설인 “제2회 쌩아올림” 콘서트

부산시회(회장 김세원)는 10월 25일 KBS부산홀에서 부산시 관계자 등 내외 귀빈과 부산의 2,200여 전문건설사 임·직원 및 가족 등 총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부산전문건설인 「제2회 쌩아올림 콘서트」를 개최했다.

행사를 주최한 부산시회 김세원 회장은 “팬데믹의 어려움과 척박한 건설환경 속에서도 부산경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부산전문건설인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아름다운 선율을 통해 작은 휴식을 가짐으로써 새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자는 뜻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가수들을 초청하여 이번 음악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음악회는 국민가수 ‘장윤정’와 ‘정수라’, ‘해바라기’, ‘펜텀싱어’, ‘부산아시아콘서트 오케스트라’가 출연하여 감동의 무대를 선사하였으며, 행사의 막바지에는 건설현장 최일선에서 국가와 가족을 위해 피땀 흘리며 노력하는 이 시대의 아버지를 영상과 음악을 통해 표현함으로써 음악회에 참석한 모든 이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후원 명단

구분	후원자명단	후원금액	비고
부산시회 회장단 및 감사	회장 김세원(1,000만원) - (주)세원이엔지 부회장 심수율(330만원) - 건진개발(주) 부회장 김형겸(330만원) - 지산특수토건(주) 부회장 윤영갑(330만원) - (주)보광 부회장 송유경(330만원) - 경남종합조경 회원감사 김문곤(100만원) - 신우개발 회원감사 이주상(110만원) - 거북건설(주)	25,300,000원	
부산시 유관기관, 협회 시·도회 및 업종별협의회	부산상공회의소 장인화 회장(300만원) 서울시회 노석순 회장(300만원) 경기도회 이성수 회장(300만원) 실내건축공사협회 이승성 회장(300만원) 외, 대구시회 김석 회장, 광주시회 박병철 회장, 인천시회 지문철 회장, 대전시회 김양수 회장, 울산시회 조현철 회장, 강원도회 박용석 회장, 충북도회 우종찬 회장, 세종시·충남도회 박종희 회장, 전북도회 임근홍 회장, 전남도회 고성수 회장, 토공사협회 이재균 회장, 습식·방수공사협회 김학영 회장, 도장공사협회 엄재열 회장, 금속구조물·창호공사협회 정지호 회장, 철근·콘크리트공사협회 장세현 회장	37,000,000원	
부산시회 임원 및 회원사	(주)연동 대표이사 반백철(110만원) 삼지건설(주) 대표이사 이태원(110만원) 외 (주)흥산건설산업 대표이사 강용호, (주)청북건설 대표이사 정귀자, (주)비엠 대표이사 배미애, 부산 습식방수분과회	3,800,000원	
합계		66,100,000만원	

※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3 2022회계연도 모니터 회의

부산사회(회장 김세원)는 10월 27일 (11:30/더스타뷔페 갤러리룸) 회장단 및 모니터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회계연도 모니터 회의」를 개최했다.

부산사회 김세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협회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설문조사는 회원사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 발굴과 제도개선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회원사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모니터 활동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모니터 활동에 대한 추진경과 보고와 모니터와의 대화를 통해 전문건설업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고, 그동안 설문조사 등 모니터 활동에 적극 참여한 우수 모니터에 대한 포상도 실시했다.



04 2022회계연도 신규회원 간담회 개최

부산사회(회장 김세원)는 11월 1일(11:00/이리스웨딩홀&뷔페) 2021~2022년도에 협회 회원으로 가입한 신규회원사 대표 및 임·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회계연도 신규회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부산사회 김세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신규회원으로 가입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협회의 각종 행사에도 함께 참여하여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면서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건설공사 상호시장 개방 등 어려운 전문건설업계의 상황을 협회와 함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격려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규회원들을 위해 협회의 역할과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책무와 신고사항 등을 실은 「전문건설업 신규회원 업무편람」 책자를 배부하고 한종석 사무처장의 자세한 설명이 이어졌으며, 회원사와의 대화시간을 통해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겪게 되는 애로사항과 문제점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05 2022년 해외문화유산 탐방 실시

부산시회(회장 김세원)는 회원사 대표 및 임원 등 총 54명이 참가한 가운데 11월 4일부터 11월 12일까지 7박 9일간의 일정으로 발칸 4개국(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슬로베니아)의 역사 문화유산과 고대와 현대의 건축물 등을 둘러보고 그곳의 문화를 체험하는 「2022년 해외 문화유산 탐방」을 실시했다.

탐방단은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을 시작으로 발칸의 주요 4개국을 차례로 둘러보며, 고대 로마시대의 역사와 건축양식, 이슬람 문화와 기독교 문화의 융합 등을 통하여 서유럽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해외문화유산 탐방은 코로나19로 막혀 있던 해외교류가 조금씩 정상화 되면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제화 시대의 해외 우수 건축물과 역사문화유산 등을 둘러봄으로써, 그 나라의 역사를 이해하고 건축기술의 중요성 및 건설인의 역할 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중요한 경험이 되었으며, 회원사의 견문을 넓히고 회원 상호 간의 정보교류와 협회 발전을 위한 단합의 장을 마련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06 건설분야 전문가 법률상담 등 무료자문 실시

부산시회(회장 김세원)는 11월 21일(14:00/부산시회 회의실) 회원사의 고충해결과 당면한 애로사항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도움을 주기 위해 「건설분야 전문가 법률상담 등 무료자문」을 실시했으며, 회원사 임·직원 10여명이 참여해 법률·노무분야에 대해 도움을 받았다.

이날 상담에서는 부산시회 이윤근 자문변호사가 발주자 및 원도급사와의 분쟁과 하자보수 관련 분쟁에 대한 법적 대처방안 등에 대해 상담했으며, 여찬모 자문노무사는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퇴직금 분쟁 등 노무분야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상담을 실시하였다.



07 2022년 대표회원 연수회 개최

부산사회(회장 김세원)는 12월 1일(목), 경주 천마총과 석굴암 일대에서 임원 및 대표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대표회원 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세원 회장은 “건설경기 침체와 어려운 경제상황이 이어지며 전문 건설업계는 수주물량 감소 등으로 많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고 말하며, “협회는 부산전문건설업계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부산시와 발주기관, 지역 언론사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며, 부산전문건설사업자의 일감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12대 임원과 대표회원 간의 정보교류를 통해 협회와 부산 전문건설업계의 발전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었으며, 역사문화 탐방으로 경주 일대를 돌아보며 대표회원의 견문을 넓히는 뜻깊은 행사로 큰 호응을 얻었다.



08 2022회계연도 제2차 운영위원회의 및 제2차 임원연석회의 개최

부산사회(회장 김세원)는 12월 8일(10:30/서면 월강초밥 4층 회의실) 「2022회계연도 제2차 운영위원회의 및 제2차 임원연석회의」를 차례로 개최했다.

이날 제2차 운영위원회의에서는 운영위원 및 감사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주요 사업추진 실적을 보고하고 '포상대상자 추천(추인)의 건'과 '협회 사무실 임차보증금 인상에 따른 재산조성적립금 추가 운용'에 대한 의결이 상정되어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같은 날 11시 30분부터 이어진 제2차 임원연석회의에서는 임원 37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회계연도 하반기 주요 사업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와 함께 협회와 전문건설업계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09 2022년도 건설(전문)공사 실적신고 온라인 강습회 개최

부산사회(회장 김세원)는 12월 27일(14:00) 회원사의 건설공사 실적신고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유튜브를 통해 「2022년도 건설(전문)공사 실적신고 온라인 강습회」를 개최했다.

이날 온라인 교육에서는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제도와 2022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지침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국토교통부 「시공능력 평가 등의 위탁기관 지정고시」 개정에 따른 신설공사와 유지보수 공사의 실적신고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협회의 인터넷 실적신고시스템과 건설산업정보원(KISCON)의 유지보수공사 실적신고 시스템 사용방법에 대해 부산사회 조운석 경영정책부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

한편 부산사회는 회원사에서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도록 부산사회 유튜브 채널(KOSCA부산)에 강의영상을 게재했다.

2022년도 건설(전문)공사 실적신고 작성 안내

II. 2022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지침

나. 2022년도에 공시실적이 없는 업체의 경우 무실적으로 신고를 하여야만 시공능력평가를 받을 수 있음

- ※ 공시실적 없어도 기술능력평가액 및 경영평가액으로 시공능력평가액 선정됨.
- ※ 유지보수공사 실적만 보유한 업체의 경우에도 관련 연향을 등록하고 업외에 실적 외 평가항목 관련 사항을 신고·제출해야 시공능력평가를 받을 수 있음.

다. 세부공종(전문)은 해당공사와 일치하는 공종을 정확히 입력

라. 유지건설공사(물류납품, 용역)를 실적신고 한 경우 시공능력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KISCON(건설공사대장) 등록해야 함.

마. 재무제표, 매출저별 (세금)계산사업계표는 반드시 세부대리인 확인(직인·간인) 받아 제출 (※ 종합 결산 : 건설협회, 시설통 또는 기계설비 결산 : 우리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조운석 부장

회원사 수주지원 및 업역 확대를 위한 간담회 활동

01 부산지역 주요 발주기관장 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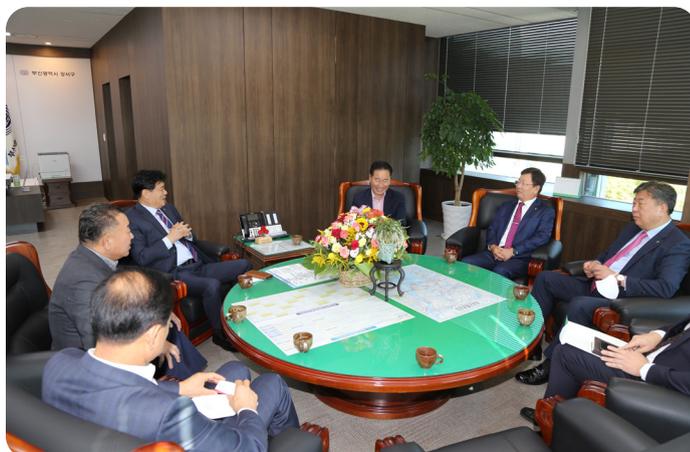
부산시회(회장 김세원)는 부산전문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수주지원 및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김형찬 강서구청장(10월 11일), 주석수 연제구청장(10월 18일) 및 김영욱 부산진구청장(10월 18일)과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전문건설업계의 현안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간담회에서 김세원 회장은 “부산지역 전문건설사업자 보호·육성을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정착과 전문-종합 상호 건설시장 개방에 따른 실시공자인 전문건설사업자가 도급·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과 함께 관내 대형건설현장에 대한 부산전문건설사업자의 하도급 참여 확대 및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각 지역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내 공공공사뿐만 아니라 민간이 발주하는 대형공사에도 부산전문건설 사업자의 실질적인 하도급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부산진구청장 간담회



강서구청장 간담회



연제구청장 간담회

02 건설대기업 영남지사장 간담회

부산사회(회장 김세원)는 11월 17일(12:00/포항롯데호텔) 회장단 및 중앙 1군 건설대기업 영남지사장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대기업 영남지사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세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산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70% 이상 참여 확대를 위해 부산지역에서 시공 중에 있는 건설대기업 현장별 하도급 참여율 자체 점검 강화와 실시공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상향 등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건설대기업 영남지회에서도 부산광역시에 해당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GS건설 이영구 영남지사장(건설대기업 영남지회장)도 “부산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해 협회와 더욱 협업하여 상생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03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참석

부산사회(회장 김세원)는 11월 30일 「2022년 부산광역시 지역건설발전 위원회」에 참석하여 부산지역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토론과 함께 현안 문제점 해결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회의는 부산광역시 이병진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도시균형발전실장 및 건설관계관, 건설 관련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부산사회는 지역건설산업 발전 안건으로 「건설공사 연간단가계약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을 건의했다.

이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3조(적용범위) 규정」에 의거 전기·정보통신공사는 단가계약 공사에도 총 계약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용토록 명시된 반면, 건설공사의 단가계약의 경우는 총계약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라도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를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건설업의 업무상 사고가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전체 대비 41.6%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소규모로 시공되는 건설공사의 연간단가계약도 전기·정보통신 공사처럼 총계약 금액 기준을 적용하여 줄 것을 건의한 것이다.

이에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에서는 부산사회의 건의를 수용해 건설공사도 연간단가 공사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소관부처)에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을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04 부산도시공사 사장 간담회

부산시회 김세원 회장 및 회장단은 12월 14일 부산지역 건설 경제위기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부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 및 관계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부산시회 김세원 회장은 △부산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 공사에 부산 전문건설사업자의 하도급 참여 확대 △물가변동(ES)부문 하도급자 신속 지급 및 점검 강화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확대 등을 건의하고, 전문건설사업자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부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은 부산지역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부산 전문건설사업자의 하도급 참여 확대 등 전문건설업체와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05 2022년 하반기 대형공사장 현장방문조사

부산시회(회장 김세원)는 12월 12일부터 12월 15일까지 4일간에 걸쳐 부산광역시와 합동으로 「초읍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등 부산지역 내 10개 대형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건설부조리 및 하도급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확인 및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현장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대금지급 적정여부 등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와 현장대리인 적정배치 및 상주여부, 특히 물가 상승으로 인한 건설비용 하도급업체 전가 등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전가 방지를 촉구했다.

또한, 지역업체 하도급 및 지역자재·장비 참여현황을 점검하여 부산 전문건설사업자가 70% 이상 하도급에 참여토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으며, 부산시회는 공종별 우수 전문건설업체 추천이 필요할 경우 협회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안내했다.



06 부산광역시 지역건설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민관 합동 회의 참석

부산시회(회장 김세원)는 12월 21일(9:00/부산광역시청 26층 회의실) 부산광역시 박형준 시장을 비롯한 건설관계관, 시의회, 건설 관련 협회, 부산 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사, 부산은행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지역건설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민관협의체 회의」에 참석하여 지역건설 위기 대응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함께 현안 문제점 해결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박형준 시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 부산시회 김세원 회장은 지역의 건설경기 위기 극복을 위해 “민간 주택공사의 신속한 사업시행인가,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한 물량 증대도 필요하지만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만큼, 현시점에서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지역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율의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과 “건설자재 등의 물가 인상은 실시공을 전담하는 전문건설업체가 가장 많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공공공사의 경우 하도급자의 물가 변동 부분도 적극 반영하여 원·하도급 변경계약서를 작성토록 하고, 민간공사에도 하도급자에게 물가인상분의 대부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종합건설업체에서도 상생의 입장에서 물가 인상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부산광역시 김광희 도시균형발전실장은 “침체된 지역건설경기 극복을 위해 주택 및 건축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건설물량을 증대시키는 한편, 지역자금 역외 유출 예방을 위해서라도 지역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율을 적극 점검하고, 건설자재 등의 물가 인상분이 실시공 전문건설업체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에서도 시공사 등을 대상으로 적극 협조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사회공헌활동

01 2022년 사랑의 연탄나눔 성금 전달 및 연탄배달 봉사활동

부산시회(회장 김세원)는 11월 1일 (14:00/범일동 매축지마을) 회원사 대표 및 임·직원, 사무처 직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매축지 마을’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및 재가 장애인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연탄 20,000장(1,650만원)의 성금을 전달하고, 구입한 연탄 중 일부를 직접 배달하는 「2022년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부산시회 김세원 회장은 “2014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9번째를 맞이하는 연탄배달 봉사활동에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과 감염병의 확산으로 예년에 비해 도움의 손길이 많이 줄어든 현실에서도, 매년 잊지 않고 참여해주시는 회원사 대표 및 임직원과 협회 사무처 직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지역의 소외계층과 어려운 이웃에게 부산전문건설인의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어 조금이나마 훈훈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나눔과 봉사를 통해 협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의 동반자로서 공동번영의 가치를 함께 실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02 부산진구 제13회 10,000세대 사랑의 김장 나눔 지원금 전달

부산사회(회장 김세원)는 12월 2일(11:00/송상헌 광장) 개최된 「제13회 10,000세대 사랑의 김장 나눔」 사업에 동참하여 서병수 국회의원과 함께 사회복지법인 주는사랑복지재단(대표이사 김경헌)에 김장 나눔 지원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겨울철 월동준비에 취약한 부산진구 지역의 소외 계층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김장김치를 나누어 주는 목적으로 개최되었으며, 협회는 “앞으로도 나눔과 봉사를 통해 협회가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의 동반자로서 공동번영의 가치를 함께 실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03 사하구청 희망두레박 사업 지원금 전달

부산사회(회장 김세원)는 12월 8일(15:00/사하구 구청장실) 사하구청을 방문하여 이갑준 구청장에게 「희망두레박」사업 지원금 500만원을 직접 전달했다.

사하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하희망두레박사업은 사하구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사업으로 부산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협약을 통해 지역의 노인복지관, 자활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진행하는 복지사업에 나누어 지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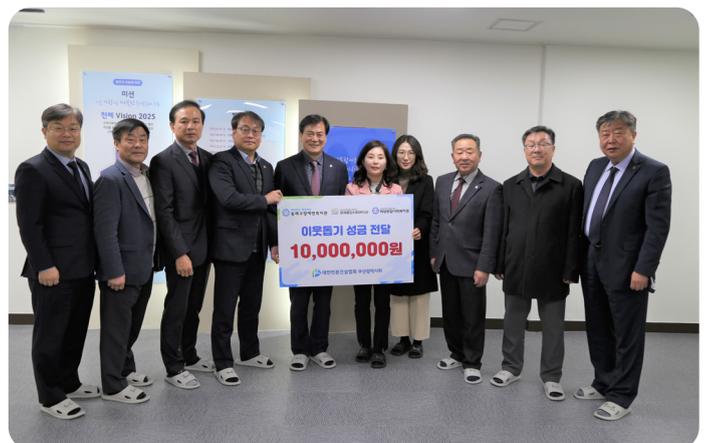
협회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 및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을 꾸준히 펼쳐나갈 예정이다.



04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기관 3곳에 성금전달

부산사회(회장 김세원)는 12월 14일(11:00/백양종합복지관) 동래구 장애인복지관(관장 여동훈), 동래종합사회복지관(관장 하소연), 백양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혜정) 이상 3곳의 기관에 1,000만원의 지원금을 전달했다.

김세원 회장은 이 자리에서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많이 부족하여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잘 알고 있기에, 협회는 앞으로도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건설경제단체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나눔과 봉사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05 부산진구청 김장나눔 행사 지원금 전달

부산사회(회장 김세원)는 12월 14일(14:00/부산진구 구청장실) 부산진구청을 방문해 김영욱 구청장에게 김장나눔행사지원금 500만원을 직접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지원금은 부산진구 새마을회에서 추진하는 지역의 소외계층 돕기 「김장나눔 행사」에 전달되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협회는 매년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계층 및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을 꾸준히 펼치고 있으며, 올 연말에도 부산시교육청에 저소득층 학생 지원을 시작으로 동래구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복지시설 3곳 지원금 전달, 동구 매축지 마을에 사랑의 연탄나눔 지원금 전달 등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고 있다.



06 부산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장학금 전달

부산사회(회장 김세원)는 12월 20일(11:30/부산시교육청 교육감실) 부산시교육청을 방문해 하운수 부산시교육감에게 저소득층 학생 장학금 1,500만원을 직접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지원금은 부산시교육청과의 교육결연활동의 일환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을 돕기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되며,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보다 폭넓은 학습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회는 그동안 지역 교육환경 개선과 저소득층 학생을 돕기 위한 교육메세나 활동을 2012년부터 꾸준히 전개하며 협회의 사회적 책임과 나눔 문화 확산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07 부산진구 관내 소외계층 지원금 전달

부산사회(회장 김세원)는 12월 22일(16:00/부산진구 새마을회) 이헌승 국회의원과 함께 부산진구 새마을회를 방문하여 「부산진구 새마을회」와 「부산시 중식봉사연합회」에 각각 250만원, 총500만원의 지원금을 전달했다.

이헌승 국회의원이 함께 참석한 이번 전달식에서 협회 김세원 회장은 “지역의 소외계층과 어려운 이웃에게 부산전문건설인의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어 조금이나마 훈훈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지원금을 전달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나눔과 봉사를 통해 협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의 동반자로서 공동번영의 가치를 함께 실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08 기장군 소외계층 돕기 지원금 전달

부산사회(회장 김세원)는 12월 21일 정동만 의원과 함께 기장군 관내 「(사)기장참사랑나눔미(회장 최현돌)」에 300만원, 「부산시사할린영주귀국자회(회장 박철아)」에 200만원을 각각 전달했다.

김세원 회장은 “우리가 잠시 잊고 지낸 소외된 이웃들에게 부산전문건설인의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어 조금이나마 훈훈한 연말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협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09 사하구 소외계층 지원금 전달

부산사회(회장 김세원)는 12월 21일 최인호 의원과 함께 사하구 관내 「(사)지구촌사랑의쌀나눔재단 부산사하구지부」에 쌀나눔 지원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김세원 회장은 “아직도 우리 주변엔 끼니를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웃들이 많으며, 부산전문건설인의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어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협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10 부산진구 「에너지 취약세대 집 고쳐주기」 지원금 전달

부산사회(회장 김세원)는 12월 29일 서병수 의원과 함께 부산진구 관내 「에너지 취약세대 집 고쳐주기 사업」에 지원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지원금은 부산진구 새마을회에서 추진하는 에너지 취약세대의 집을 고쳐주는 사업에 쓰여져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협회동정

01 중앙회 제12대 회장 재선거에 윤학수 대표 당선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 제12대 회장 재선거에서 윤학수 (주)장평건설 대표이사가 선출됐다. 윤학수 회장은 12월 19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남은 임기 동안 5만여 회원사가 소속된 전건협 회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전건협 중앙회는 19일 서울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대의원 총 16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대 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총회는 선거관리위원회 소개와 경과보고 후 후보 기호에 따라 이승성, 윤학수 후보 순으로 각각 정견발표를 통해 현 전문건설이 당면한 위기와 협회 발전방향에 대한 소신과 포부를 밝히며 대의원들에게 소중한 한 표를 호소했다.



두 후보는 잘못된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으로 상호시장 진출 등 전문건설업에 일방적으로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를 바로잡고, 협회의 위상을 높이는 것과 함께 회원사 권익보호를 강화겠다는 공약들을 내세웠다.

이날 투표에는 재적 대의원 165명 전원이 참석해 개표 결과 기호 2번 윤학수 후보가 91표를 획득하며 과반수를 득표해 신임 중앙회장으로 당선됐다. 기호 1번 이승성 후보는 74표를 받았다. 윤학수 회장은 1957년생으로 전건협 보링그라우팅공사협회 9대 회장, 한국건설교통기술협회 8·9대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공약이 다 완료될 때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효율적인 정책 대안과 강한 추진력,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협상 전략으로 전문건설업을 정상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수주지원

01

부산지역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부산 전문 건설사업자 하도급 참여 확대 추진

부산 전문건설사업자가 70% 이상 하도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부산시회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산지역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시공사가 선정된 조합 및 시공사를 대상으로 부산 전문건설사업자가 70% 이상 하도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고 부산광역시(건설행정과)와 함께 건설현장을 방문하는 등 부산 전문건설사업자의 하도급 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부산지역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조합에서는 브랜드 가치를 위해 수도권 건설대기업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들 건설대기업을 자사 연고지 전문건설사업자에 하도급하고 있어, 부산시민의 분양대금 수천억원이 수도권 등 타 시·도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부산시회는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지역 건설장비 및 생산 건설자재를 사용하고 건설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있는 부산 전문건설사업자의 하도급 참여 확대는 부산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됨을 강조하며, 부산광역시 및 조합, 시공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 **추진현황**

추진일자	추진한 곳		비고
	재개발·재건축 조합	시공사	
2022. 10. 14	온천4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삼성물산(주)	
2022. 10. 28	서면 메디컬 지역주택조합	(주)태영건설	
2022. 11. 14	시민공원주변재정비촉진3구역 재개발정비 사업조합	디엘이앤씨(주)	
2022. 11. 14	명보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주)태영건설	
2022. 12. 14	반여3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	디엘이앤씨(주)	

02

2022년도 하반기 발주예정 종합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확대 추진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종합건설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협조

종합건설업체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공사포기각서 사전 징구, 추가 공사 불인정, 이면계약서 작성 강요 등 각종 갑질의 횡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 거래질서가 붕괴되고 있으며, 이러한 갑질의 횡포는 건설시장을 넘어 사회 전반적으로 여전히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종합건설업체의 하도급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과 부실공사 예방,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근절 및 실시공자인 전문건설업체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2010년부터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를 적극 도입·시행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확대를 위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개정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국가에서 발주하는 모든 종합공사를 공사금액 관계없이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 가능토록 하였으며,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로 전문건설사업자도 주계약자로 참여 가능토록 확대·시행하였다.

부산광역시에서도 정부 정책에 따라 매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실시단계 단계에서부터 공정별 비율(금액)을 사전 검토하여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적용이 힘들 경우 발주부서의 감사관실 “사전컨설팅” 감사 검토 결과를 반영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지역 주계약자 공동도급 전년도 발주건수(62건) 대비 금년 발주건수가 적어 부산시회는 10월 31일 부산광역시 및 16개 구(군)청 등 부산지역 주요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도 하반기 발주예정 공공공사 중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종합공사에 대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03 상·하수도 관로 세척공사 전문건설사업자로 제한 발주

발주시 전문건설 상·하수도설비공사사업으로만 입찰 참가 자격 제한해 줄 것을 당부

최근 상·하수도관로 세척공사를 전문건설 상·하수도설비공사사업과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세척)을 동시에 보유한 자로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례가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따르면 상하수도관로 세척공사는 상·하수도설비공사사업의 업무내용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조(다른 법률의 관계)에서 건설공사의 범위에 대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다. 다시 말해 상·하수도 관로 세척공사는 상·하수도설비공사사업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므로 입찰참가자격을 전문건설 상·하수도설비공사사업으로만 제한하여 발주되어야 한다.

이에 부산시회는 11월 3일 부산광역시의 상수도사업본부 및 각 사업소에 향후 「상·하수도관로 세척공사」 발주시 전문건설 상·하수도설비공사사업으로만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앞으로의 과도한 규제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04 건설공사 설계시 원가계산 제비율 요율 적정 반영 협조

건설공사 실시공자인 전문건설사업자의 적정공사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서는 일반관리비(재료비·노무비·경비의 합계액의 6% 이내), 이윤(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의 15% 이내) 등 원가계산 제비율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발주기관에서는 건설공사 설계시 낮은 제비율을 적용하여 건설공사를 발주하고 있어, 전문건설사업자들은 공공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이윤은 고사하고 적정공사비 부족으로 기업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부산시회는 11월 30일 부산지역 주요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건설공사 설계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서 규정된 건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최대한 반영하여 건설공사 실시공자인 전문건설사업자의 적정공사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 건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근거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3관 공사 원가 계산

• 간접노무비 적용기준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구분	공사종류별	간접노무비율	비고
공사종류별	건축공사	14.5	
	토목공사	15.0	
	특수공사(포장, 준설 등)	15.5	
	그밖의 공사(전문.전기.통신등)	15.0	
공사규모별	50억원 미만	14.0	
	5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15.0	
	300억원 이상	16.0	
공사기간별	6개월 미만	13.0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15.0	
	12개월 이상	17.0	

• 일반관리비 적용기준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율

종합공사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50억원 미만	6.0	5억원 미만	6.0
5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5.5	5억원 이상~30억원 미만	5.5
300억원 이상	5.0	30억원 이상	5.0

• 이윤 적용기준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05 부산전문건설사업자 하도급 참여 확대 지원 추진

부산시회와 부산광역시 하도급관리팀은 「부산광역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건설공사에 부산전문건설 사업자의 하도급 70% 이상 참여와 동시에 부산지역 생산 건설자재 및 장비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12월 19일부터 22일까지(4일간) 2022년 하반기 대형 건설현장 실태점검을 하던 중 하도급 참여율이 10% 미만으로 매우 저조한 건설현장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지역 구청에 시공사를 대상으로 부산지역 전문건설사업자의 하도급 참여 협조 문서 시달과 함께 건설현장 실태 점검을 강화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요청했다.

06

전문업종 통합(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따른 전문공사 발주 건의

넓어진 업무범위에도 기존 발주 관행 잇따라

2022년부터 전문건설업 대업종화가 본격적으로 적용되었다.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제외한 28개의 전문건설업종은 14개의 업종으로 통합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도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건설업의 명칭과 업무범위가 확장·조정되었다.

다시 말해 기존의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가 복합된 공사는 이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라는 1개의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이며,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1개 업종을 보유한 업체라면 시공자격을 가진다.

그러나 이렇듯 유사업종끼리의 통합으로 인해 넓어진 업무 범위에도 불구하고, 일부 발주기관에서는 여전히 기존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가 복합된 공사를 전문대업종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 아닌, 종합공사(조경공사업)로 발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 2개의 공종이 혼합된 공사(부대공사 포함)가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다는 단순한 논리로 전문공사를 종합공사로 분류하여 발주하는 것은, 공종을 통합 하여 하나의 업종으로 분류한 취지가 명백하게 몰각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관련 별표1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서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내용을 자체적인 판단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어 매우 부당하다.

이에 부산시회는 12월 27일 부산광역시 및 16개 구(군)청 등 부산 지역 주요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조경식재와 조경시설물설치가 복합된 조경공사를 발주할 경우 종합건설 조경공사업이 아닌 전문건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기준으로 발주하여 줄 것과, 경우에 따라 종합업체(조경)에게 입찰참가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발주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였다.

제도개선

01

도로 시설공사 건설사업자 시공 의무화 건의

부산시회는 10월 5일 부산지역 전문건설사업자의 불합리한 규제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부산광역시 규제발굴단 규제개선 과제안건으로 도로 시설공사의 건설사업자 시공 의무화를 건의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에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을 비롯한 다중 이용시설 중 한정적 시설물에 대해서만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터널, 교량 등)시설공사에 대한 시공자 제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특히, 부산지역의 경우는 해당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일부 발주기관에서 간선도로 포장공사 등을 직접 장비나 인력을 동원하여 시공하고 있어 「도로법」에 따른 도로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유지·보수하는 건설공사는 전문적인 시공기술력을 겸비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을 건의한 것이다.

이에,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추진단에서는 부산사회 건의 의견을 중앙부처(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로 즉시 건의하여 도로 시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자의 시공 의무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02

조달청장 간담회 관련 건의사항 제출

부산시회는 10월 17일 「조달청장 간담회」와 관련하여 부산전문건설업계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건의사항을 중앙회에 제출했다.

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달청장 간담회 관련 건의사항

- 건설공사 설계시 건설자재 가격 폭등에 따른 원가상승분 적정 반영 및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적극 반영
- 건설사업자의 원활한 공사 수행과 적정공사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건설공사 설계시 급등한 원자재 가격 등 원가상승분을 적극 반영
-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조정이 가능하므로 조달청의 자재조달가격 발표 즉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적극 반영
- 원사업자(종합건설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을 조정·지급한 경우 지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전문건설사업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공사금액의 조정시기, 조정사유 및 조정률·금액 등)하고, 적정한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03

건설공사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가시 고용·산재보험료 제외 건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는 건설공사 적격심사에 따른 입찰가격 평가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규정하여 입찰가격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건설공사 수행시 근로자 운용, 안전사고 예방, 자재구입 등 건설 현장을 운영함에 있어 건설사업자가 일부 부담하여야 할 항목이지만 각종 보험료 등에 대한 건설사업자의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낙찰률 및 하도급률 등으로 인한 공사비 부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공사 적격심사시 A값에 대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건설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산재보험료는 A값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건설사업자의 보험료 부담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적정공사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부산시회는 11월 17일 고용·산재보험료 또한 건설공사 적격심사에 따른 입찰가격 평가시 A값에 포함하여 낙찰률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여 건설사업자의 적정공사비 확보와 기업경영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개정을 행정안전부(중앙회 경유)에 건의했다.

04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그림자 규제 발굴 및 개선」 관련 의견 제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에서는 그림자 규제를 집중 발굴·개선을 추진 중에 있어 부산시회는 11월 17일 다음과 같이 규제혁신추진단(중앙회 경유)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공공사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완화 건의

- 기획재정부는 건설사업자의 적정공사비 확보 및 부실시공 예방 등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2019. 9. 17.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건설공사 입찰에 따른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계약이행능력 및 일자리창출 실적 등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한 입찰제한 처분 규정을 삭제함.
- 그러나, 행정안전부에서는 건설공사 입찰에 따른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를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행정안전부 지방계약법령도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가 제출하지 않거나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한 입찰제한 처분 규정을 삭제해 줄 것을 건의함.

0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의견 제출

부산시회는 11월 21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정법률안에 대한 부산시회 의견

· 연동대상 주요 원재료 적용기준 완화

(개정안)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 →

(부산시회 의견)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5 이상

- 이유 : 연동제의 근본취지는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지급이므로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 적용기준을 보다 완화하여 급등되는 원자재의 가격이 대부분 연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연동요건 대상 확대

(개정안) 원재료 가격 변동률의 100분의 10 이내 →

(부산시회 의견) 원재료 가격 변동률의 100분의 20 이내

- 이유 : 10% 이내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연동요건 대상범위를 20% 이내로 확대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계약자유의 원칙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함.

06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의견 제출

부산시회는 12월 16일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중앙회 경유)에 개정의견을 제출하였다.

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하도급대금미지급 신설

(제55조 제2항 개정)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대금 채권확보가 어려워 수급사업자의 기업경영에 많은 애로가 발생되므로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체한 때에도 계약의 해제·해지사유로 확대가 필요함.

2022년 4/4분기 신기술 현황

- 지정번호(지정일자) 942(2022.10.07.)
- 개발업체 (주)예화엔지니어링

» 신기술명 메쉬 함침형 합성고분자계 시트와 폴리우레탄계 도막방수재를 적용한 접합부 2중 보강 복합방수공법 (MULTITECH System)

» 주요 내용 합성고분자계 시트방수재 상부에 메쉬를 함침시켜 시트의 기계적 물성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치수안정성 향상으로 컬링 현상을 방지하고, 시트방수재 상부에 도포되는 도막방수재와의 일체성을 확보하였다. 시트방수재 생산시 접합부 날개를 형성하여 접합부를 구성함에 있어 단차를 최소화한 겹침접합구조이며, 2중 접합구조를 바탕으로 응력 분산 거동 기술을 적용하여 접합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거동 하중에 대해 안정적인 대응성 확보를 통해 방수층 전체의 장기 방수 안정성 및 내구성을 향상시킨 노출 복합방수공법(MULTITECH System)

- 지정번호(지정일자) 943(2022.10.18.)
- 개발업체 에스지이(주), 현대제철(주), (주)케이알산업, 쌍용건설(주), (주)다산건설터트

» 신기술명 제강슬래그 골재 특성을 활용한 아스팔트 도로포장공법

» 주요 내용 높은 맞물림 효과를 제공하는 제강슬래그 골재를 사용하여 기존 보다 높은 교통하중 저항성을 가지는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을 제조하고 유압-편심하중을 제공하는 포설장비로 다짐도를 향상하여 기존의 3차 다짐공정을 생략할 수 있는 공법

- 지정번호(지정일자) 944(2022.10.21.)
- 개발업체 삼성물산(주), (주)굿윌코퍼레이션, (주)덕신하우징

» 신기술명 도브테일 레일이 포함된 거푸집용 데크플레이트와 트래퍼조이드 앵커를 이용한 무타공 행잉공법

» 주요 내용 사다리꼴 형상의 도브테일 레일홈이 형성된 강판과 트러스거더로 구성된 트러스 도브데크와, 앵커헤드, 앵커정착볼트, 스태프와셔, 스프링, 노브 및 달대체결너트로 구성된 트래퍼조이드 앵커를 이용하여 천장마감재 및 각종 전기 기계·설비를 별도 타공 없이 슬래브에 설치할 수 있는 무타공 행잉공법으로, 일정한 성능의 인발하중을 확보할 수 있고, 공기가 단축되며, 소음 및 분진 발생이 없음

• 지정번호(지정일자)	945(2022.10.31.)
• 개발업체	(주)한국방재기술, 두산건설(주)

- » 신기술명 에너지소산장치가 설치된 편심가새골조 시스템을 이용한 강도 및 강성이 증진된 내진보강기술 (SRM공법)
- » 주요 내용 구조물에 일체화되어 동반 거동하는 기둥과 가새로 구조물의 강도 및 강성을 보강하며 보를 구조물과 분리 시공하여 시공성을 향상시키고, 중앙부에 탄소성 거동으로 손상이 집중될 수 있는 에너지소산장치를 도입함으로써 중소규모 및 대지진에 모두 대응 가능한 내진보강기술

• 지정번호(지정일자)	946(2022.11.07.)
• 개발업체	케이엘건설(주)

- » 신기술명 수평창성 차수기능을 갖는 연질형 폴리우레탄을 이용한 전면 밀착 비노출 복합방수공법 (Acrofix Pro SYSTEM)
- » 주요 내용 폴리우레탄 상부에 합성고분자계 방수시트재를 적용한 전면 밀착형 비노출 복합방수공법으로 시트 간 접합부 및 취약부 보강에 있어 수평창 특성을 가진 고흡수성 수지를 연질의 폴리우레탄 수지와 융합하여 개발한 특수소재로 적용함에 따라 접합부 손상 시 침투수와 반응하여 수평창을 통한 복원성 차수 기능의 발현이 가능하고, 시트표층부 마이크로 메쉬 처리 기술을 적용하여 접합부 상부에 도포되는 도막과 시트표층부와의 유효 부착 비표면적 증대로 접합부의 이질재간 일체성을 향상한 기술

• 지정번호(지정일자)	947(2022.11.11.)
• 개발업체	(주)포이닉스

- » 신기술명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의 표층을 복층구조로 시공하는 배수성 저소음 포장 공법
- » 주요 내용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의 표층을 2개 층으로 분리하여 상부층 8mm 골재 혼합물과 하부층 13mm 골재 혼합물로 복층구조를 형성하되, 전용장비로 동시에 포설하고 동시에 다짐하는 기술로 방사형SBS(RSBS)를 첨가한 개질제를 사용하여 공극률이 22%(간이법) 이상 확보되어 배수기능이 향상되고 빗길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소음을 저감하는 배수성 저소음 포장 공법

- 지정번호(지정일자) 948(2022.11.11.)
- 개발업체 (주)승기건설, (주)빔스리젠

» 신기술명

엠보싱 성형기술과 신축가변보수기를 이용한 하수관로 비굴착 부분보수 공법

» 주요 내용

엠보싱 성형 및 신축가변보수기를 이용하여 접착·보강제가 함침된 보강섬유를 하수관의 내면에 엠보싱 라이닝면으로 성형하여 하수관의 결함부위를 보수·보강하는 하수관로 비굴착 부분보수 기술로 ①보수기의 요면에 갇힌 접착 보강제의 누출이 차단되어 보수단면의 형상계수 증가와 강화반응에 의한 물성 증가로 강도와 강성을 유지하며, ②보수기의 팽창 시 종방향에 수축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가압팽창 시 팽창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라이너 성형몰드의 파열을 방지하고 능동적 신장 기능으로 라이너 성형몰드의 폴딩을 방지하는 기술

- 지정번호(지정일자) 949(2022.11.21.)
- 개발업체 한국라이텍개발(주), (주)블루큐어

» 신기술명

UV광조사로봇과 자동경화시스템을 이용한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보수 및 보강공법

» 주요 내용

유리섬유 튜브라이너를 UV광조사 로봇으로 신속경화를 구현하는 공법으로, 튜브라이너 내부 삽입이 용이한 로봇과 그 센서들로 측정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목표 경화온도 범위에 도달하도록 이동속도 및 광출력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경화 시스템을 적용한 노후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보수 및 보강 공법

• 지정번호(지정일자)	950(2022.11.28.)
• 개발업체	(주)조선산업, 조선판넬(주)

- » 신기술명 거치돌기가 구비된 지지대를 이용한 패널 낙하 방지형 저소음 슬래브 거푸집 공법(PD 공법)
- » 주요 내용 슬래브 거푸집 해체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길이 조절 기능과 거치돌기가 구비된 지지대 및 낙하 방지형 슬래브 거푸집 패널을 이용하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슬래브 거푸집 설치 및 저소음 해체가 가능한 슬래브 거푸집 공법(판도라 공법 : PD공법)

• 지정번호(지정일자)	951(2022.11.21.)
• 개발업체	(주)맨홀컨설턴트, 삼서건설(주)

- » 신기술명 복합원형절단기 및 센터링 홀더와 테이퍼 바이스(Taper Vise)를 이용한 맨홀보수공법(CTM공법)
- » 주요 내용 복합원형절단기를 센터링 홀더(Centering Holder) 장치로 맨홀틀의 중심에 고정하고 코아드럼 커터날을 맨홀의 종류별 절삭 규격에 맞게 선택 후 고정하여 노면을 절삭하는 절삭 깊이 조절시스템(Cutting Depth Control System)을 적용하여 절삭 작업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테이퍼 바이스 웨지(Taper Vise Wedge) 원리를 이용한 맨홀틀 인상보수장치로 포장 절삭블록을 바닥면에서 서서히 분리하고 리프트 등 장비로 외부로 들어내 부착폐기물을 제거하여 인상(굴착)한 후 맨홀 틀과 결합된 상태 그대로 도로면에 거치하여 평탄성을 확보하는 기술

※ 출처 :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www.kcnet.or.kr) → 신기술현황 → 지정현황(건설신기술)

변하지 않는 열정으로 끊임없이 도전하는 건설인

(주)화성건설 대표이사 변용규



실패를 해낼 줄 안다는 것,
그것은 실패에 당당히
맞서고, 실패를
부끄러움이나 좌절이 아닌
권리로 삼을 줄 아는 것

길이 끊어진 곳에 새로운 길이 시작된다. 처음부터 길이란 없었다. 자꾸 다니다 보니 비로소 길이 되고, 사람이 드나들게 된다.

(주)화성건설 변용규(59) 대표는 길을 개척하는 건설인이다. 그는 실패를 ‘해낼 줄’ 안다.

그는 끊임없이 실패한다. 하지만 물러서는 법이 없다. 도전에 도전을 거듭해서 현실화시키어야 한다. 그 끈질긴 도전의식이 놀랍다.

화성건설 입구에 정겨운 인사말이 적혀있다. ‘참 좋은 인연입니다’, ‘좋은 일 많으십시오’. 변 대표의 첫인상도 푸근하다. 하지만 자세를 보니 빈틈이 보이지 않는다. 외유내강형이라고나 할까.

거창 출신인 그는 부산에서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형의 부름을 받았다. 1988년 제대한 지 이틀 만에 ‘노가다’판에 뛰어들며 전문건설업과 인연을 맺었다. 당시 부산에서 유명세를 떨쳤던 국제토건 건물과 도시개발공사 사옥 건립공사에 참여하면서 착실하게 ‘일머리’를 키워나갔다.

하지만 그에게 인생 최대의 시련이 닥쳐왔다. 1997년 외환위기에 회사가 건잡을 수 없이 흔들거리더니 결국 폐업이라는 청천벽력을 맞고야 말았다. 빚을 떠안은 회사대표의 동생이어서 재취직도 힘들었다. 달랑 거래처 전화번호부만 들고 나온 그는 살길이 막막했다.

“일가족 세 명을 데리고 절에 들어가 텐트를 치고 2년간 버텼습니다. 농사를 지어주고 입에 풀칠을 했죠. 건설현장 ‘노가다’로 번 돈이 고작 80만 원밖에 안 되더군요.”

‘기회는 반드시 온다. 절망하지 말고 기다리자’며 이를 악물었다. 행운의 여신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 형의 지인이 그를 불렀다. “기술자가 놓고 있으면 뭣하나. 일을 해야지”라며 그에게 1500만 원이란 거액을 쥐어주며 일거리를 주었다.

고된 재기의 나날이 시작됐다. 열심히 뛰고 또 뛰었다. 덕천동 천막집에 공업사를 차리고 동네일부터 시작했다. 사정이 나아지자 화명동에 컨테이너 사무실을 차리고 정성을 다해 고객의 요구에 맞춰나가며 신뢰를 쌓아나갔다. 그리고 만덕동에 번듯한 자신의 회사건물을 지었다.

변 대표는 술한 어려움에도 꿈을 잃지 않았다. 초창기 기술적으로 서울에 비해 엄청나게 뒤쳐진 시공기술 때문에 온갖 비아냥을 들었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성장하기 위한 쓴 약으로 받아들였다. “기어코 실력을 보여주리라.” 굳게 마음먹은 그는 서울과 일본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선진공법과 용접 기술, 디자인 등을 세세히 관찰했다. “80년대 후반 서면에는 선진공법으로 세워진 건물이 많았습니다. 출근하듯이 나가 살살이 돌아다녔죠. 벽 대신 기둥으로 하중을 지탱하고 외면을 판으로 대체하는 커튼월 공법도 현장에서 보고 배워서 익혔어요.”

변 대표는 온갖 어려움이 닥쳐도 절대 물러서지 않고 맞서 나갔다. 2005년 덕천동 한 병원 건물 내부공사를 맡았을 때였다. 마치 성냥갑을 서로 다르게 쌓아 올린 모양이어서 그야말로 고난도 공사였다. “천정을 알루미늄이 아닌 철로 마감해야 하는 데다 볼트가 밖으로 드러나게 보여서는 안 되는 난감한 상황이었죠.”

수없이 스케치를 해보고, 고민을 거듭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실패를 겪었지만 ‘불가능은 없다’는 강한 의지 하나로 버텼다. 마침내 멋진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철판 접는 방식을 바꾸면 되

겠다’. 바로 이거다! 유레카!

“착공 이후 공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현장에서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수없이 아이디어를 그려보고 머릿속으로 상상을 했습니다. 도면을 모조리 기억할 만큼 보고 또 공부했어요.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니 참으로 뿌듯합니다.” 이후 변 대표의 화성건설은 건축사무소의 인정을 받아 수십 건의 공사를 함께 했다. 입소문도 날개 돋친 듯 퍼져나갔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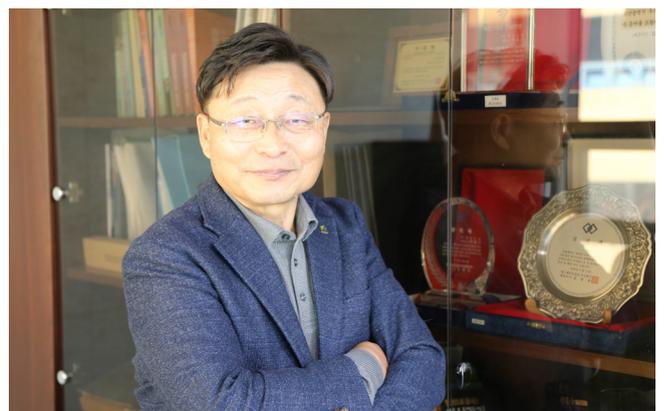
2016년 생곡 자원순환센터 공사는 그의 최고 성과로 기록될 만하다. 건물은 재활용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강통(켄)으로 건물 외벽을 구성해야 하는 특이한 ‘작품’이었다. 문제는 4t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켄을 조달하는 것이었다. 부산의 고물상을 전전하며 겨우 구했지만 필요량에는 턱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변 대표의 장교(?)가 또 시작됐다. ‘실패를 해내야 하는’ 지난한 과정이었다. 기발한 생각이 섬광처럼 그의 뇌리를 쳤다. “밑에 철판을 대고 압착켄을 조밀하지 않게 배치해서 본드로 붙이면 되는 거였죠.” 또다시 유레카! 이렇게 해서 벽체 외장이 완성됐다.

변 대표는 평소 도면 그리기를 즐긴다. 차를 타고 가면서도 눈을 감고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위한 상상을 한다. 그게 오늘의 그를 있게 해준 비결인 게다. 그에겐 만화나 영화도 훌륭한 아이디어의 원천이 된다. 얼마든지 현실화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실패를 해낼 줄 안다는 것. 그것은 실패에 당당히 맞서고, 실패를 부끄러움이나 좌절이 아닌 권리로 삼을 줄 아는 것이다.

그렇다. 변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고, 실패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승자는 한 번 더 시도해 본 패자’라는 말이 변 대표를 가리키는 듯하다.



변하지 않는 열정으로 끊임없이 도전하는 건삶인

(주)서우산업 대표이사 **이준희**



젊은층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건삶인이 늘어나야 한다

젊다. 하지만 눈매가 날카롭게 번득인다. 말투가 서투르지 않고 노련하다. 상당한 경험칙을 쌓은 듯 차분한 모습이다.

(주)서우산업 이준희(54) 대표는 “제가 인터뷰 자격이 되나요?”라면서도 ‘신(新)노가다론’과 주인의식 등을 막힘없이 펼쳐낸다. 그에게서 전문건설업의 신선한 세대교체 분위기가 느껴진다.

이 대표는 진주의 건설자재 생산업체인 (주)천보철강에서 일하다 뜻하지 않게 부산으로 오게 됐다. 그는 성실하고 유능한 직원이었다. 매일 새벽 6시 반이면 출근했고, 연간 차량 운행거리만 12만km에 달할 정도로 일벌레였다.

하지만 승승장구하던 그에게 외환위기 당시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덮쳤다. “진주에서 큰 식당을 하시던 어머니께서 사기를 당하셔서 집안이 풍비박산 나버렸습니다. 저도 연대보증을 선 까닭에 월급 절반을 압류 당했죠.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를 아낀 사장의 배려로 부산지사장이 됐다. 회사의 동의하에 토, 일요일에는 자신만의 사업을 했다. “소규모 창업을 통해 개인 공사업을 했습니다. 몸을 사리지 않고 뛰고 또 뛰었습니다. 세월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를 정도로요. 그나마 사업에 성과가 있어서 3년 만에 빚을 다 갚았죠.”

그리고 2011년 법인을 설립하고, 이듬해 전문건설업 면허를 따내 오늘에 이르렀다. 성실과 정직 하나로 버틴 결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정식으로 클레임을 받은 적이 없을 정도로 좋은 이미지를 굳혔다. 물론 개인적으로 부도 등 어려운 위기에 처한 적도 없다. 대개 사업을 하면서 부실채권이나 부도 등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지만 이 대표는 순탄하게 회사를 이끌고 있다.

그 비결을 묻자 천보철강 근무 당시 사장님 덕분이라고 치켜세웠다. “한 번은 거래업체가 거액의 부도를 냈습니다. 어음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당했기에 어안이 병병하더군요.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는 없다’며 무려 4일간 잠복 끝에 숨어있던 업주를 찾아냈고 1년이 지나서야 채권을 겨우 회수했더니 사장님께서 가르침을 주시더군요.”

첫째 이윤을 많이 제시하는 업체, 둘째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업체와 거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 대표는 지금도 그 교훈을 마음에 소중하게 품고 있다. ‘욕심을 과하게 부리지 말자’는 사업철학도 여기서 나왔다. 그래서 안정 경영을 최우선시한다.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아픔을 겪었기에 같은 실수를 두 번 다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다.

맡은 사업에 대한 책임감도 같은 맥락이다. 끝까지 제대로 마쳐야 비로소 마음을 놓는 그다. 견리사의(見利思義)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이익이 되는 일이 있을 때 그 일이 과연 옳을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뜻이다. 이 대표에게는 옳음이 바로 정직 성실 책임시공이 아닐까 싶다.

“6, 7년 전 서김해산업단지에서 불이 난 스티로폼 공장을 김세원 부산사회장님과 협업해 다시 세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철골을 다시 세우고 판넬 공사를 거의 다했는데 갑자기 태풍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만약 판넬이 날아가기라도 하면 인명피해까지 우려되는 급박한 상황이었지요. 비상사태에 대비해 판넬을 지키느라고 온 직원들과 함께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덕분에 위기를 무사히 넘겼던 게 보람으로 남습니다.”

이 대표는 2021년 부산시 자랑스러운 건설인상을 받았고, 지난해는

원청업체로부터 최우수협력업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2021~2022년 부산 총렬로터리클럽 회장을 역임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힘을 쏟고 있다.

특히 그의 직원들에 대한 애정은 남다르다. 옛 부산지사 직원들과 20년 이상 함께 하는 것만 봐도 알만하다. 한술 더 떠 그는 새 면허를 취득해 간부직원들과 공동 경영하는 것도 고려 중이란다. “능력이 충분한데 실력을 발휘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비전을 심어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자신의 ‘노가다론’을 피력한다. 요즘 젊은층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건 삶이 늘어나야 한다는 거다. 그래야 인력문제를 풀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이 대표의 생각이다.

그는 ‘노가다’라는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도 시급하다고 말한다. 별다른 기술 없이 오로지 몸만 성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희소가치가 낮은 직업이 노가다가 아니던가.

부정적 이미지를 들자면 이렇다. 못 배우고 우둔한 사람들이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 갖는 직업,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환경에서 각종 무거운 자재를 들고 나르니 몸 성한 데가 없이 파스를 달고 사는 몸, 종일 자외선을 쬐 삼기에 일찍 찾아오는 피부 노화 등등.

“내 회사가 되어선 안 됩니다. 우리 모두의 공동체라는 인식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원은 소모품이 아니죠. 우리 회사라는 느낌을 가져야 해요.”

생택쥐페리가 말했다. “만일 당신이 배를 만들고 싶으면, 사람들에게 저 넓고 끝없는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키워주어라.”

아하, 그가 새 면허를 내서 공동경영을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뜻이 아니었을까. ‘주인의 마음’을 직원들의 머리와 가슴 속에 깊이 심어주기 위해서.



0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01 주요 내용

● 굴착기 관련 안전 규정 정비

- 굴착기 선회 반경에 근로자 출입 금지 조항 신설 (제20조의18 신설)
- 작업 전 후사경과 후방영상 표시장치 등의 작동여부 확인 (제221조의2 신설)
- 운전원 안전띠 착용 의무화 (제221조의3 신설)
- 버킷 브레이커 등 작업장치 이탈방지용 잠금장치 체결 의무화 (제221조의4 신설)
- 특정 조건하에 굴착기를 사용한 인양작업 허용 (제221조의5 신설)

● 향타기·향발기 관련 규정 합리화

-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등 7개의 향타기 향발기 조립 및 해체 시 점검항목 명시 (제207조 제2항 신설)
- 향타기 향발기 본체·부속장치 및 부속품 품질기준 폐지 (제208조 삭제)
- 버팀대 및 버팀줄 의무설치 개수 폐지 및 평형추 사용기준 폐지 (제209조의 6~7 삭제)
- 향타기 또는 향발기에 사용하는 권상기에 썬기장치 또는 역회전방지용 브레이크 부착 규정 폐지 (제214조 삭제)
- 권상기 설치에 관한 규칙 폐지 (제215조 삭제)
- 장력조절블록, 윈치 사용 등 향타·향발기 버팀줄 사용 규칙 폐지 (제219조 삭제)

● 이동식 크레인 탑승 제한 완화

- 작업 장소의 구조, 지형 등으로 고소작업대를 사용하기가 곤란한 경우, 이동식 크레인에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작업대를 설치하여 탑승 작업가능 (제86조 제2항 개정)

02 시행일 : 2022. 10. 18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 또는 건설법령정보 → 최근개정법령에서 확인 가능하다.

02

지방자치단체 공사 적격 심사시 산업재해 사망자 평가 유예 안내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공사 계약상대자 선정시 심사하는 신인도 평가항목 중 산업재해 사망자 감점항목에 대해 적용시점을 별도 통보시까지 유예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01 주요 내용

- 공사 계약상대자 선정시 심사하는 신인도평가 항목 중 산업재해 사망자 감점항목에 대해 적용시점을 별도 통보시까지 유예 (22.12.19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유예내용** :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
- **적용항목**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02 적용기간 : 2022. 12. 19 입찰공고분부터 행정안전부 별도 통보시까지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03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 개정·고시 안내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01 주요 내용

- 사고신고기준 완화(제60조 제1항 및 제61조 제1항 개정)
 - 건설사고 발생시 2시간 이내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 통보
 - 사고발생 인지 후 6시간 이내 통보
- 초기현장조사 대상 확대(제61조 제2항 개정)
 -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대건설현장사고 발생현장
 -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모든 현장
- 안전관리 수준 평가 대상 공사 규모(총공사비 200억원 이상)
 - 산정방법 조정(제65조 제1항, 제66조 제2항 개정)
 - 총공사비 산정 시 토지 취득·사용비 제외
- 시공자 대상 안전관리 수준 평가 시기 조정(제66조 제2항 개정)
 - 전체 공기의 50% 이상 공사 진행 현장 → 20% 진행 현장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선(제46조 제1항, 별표7 개정)
 - 비용 계상 대상에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추가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비용(신호수 배치비용 등) 항목 신설

02 시행일 : 2023. 1. 1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04

2023년 건설업 노무 관련 제도 변화 주요내용 및 요율표 안내

2023년 건설업 노무 관련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01 건설업 외국인력 고용제한 전면해제

- 외국인 불법고용 악순환 해소를 위해 고용허가 없는 근로자 사용 등에 따른 「외국인고용법」상 외국인 고용제한 전면 해제
 - (1단계) 고용제한 기간 3개월 이상 경과 업체
 - '23년 1월 1일부 즉시 해제
 - (2단계) 고용제한 기간 3개월 미만 경과 업체
 - 고용제한 기간 3개월 경과 시점에 해제

※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고용제한 기 해제(22.12. 5, 법무부)

02 건설업 외국인력 쿼터 확대

- (H-2, 방문취업) 전 산업 26만명 쿼터 중 건설업 6만명으로 제한한 취업허가 인정서 발급 한도 폐지
- (E-9, 비전문취업) 건설업 쿼터 역대 최대규모 편성 및 탄력 배정
 - 건설분야 총 3,000명* 및 1만명 탄력배정 운용
 - * ('22년) 1,813명 → ('23년) 3,000명(+1,187명)
 - ☞ '23년 2월, 5월, 8월 고용허가신청 접수 예정

03 외국인근로자 사망사고로 처벌시 고용제한

- 외국인근로자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에 의한 처벌을 받은 경우 외국인 고용제한(외국인고용법 제20조 제1항 제3의2호)
 -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22. 12. 11부터 시행

04 외국인근로자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 확대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장의 외국인근로자(E-9, H-2)도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당 연가입 대상 포함(고용보험법 제10조의2 및 법률 제16269호 부칙 제2조)
 -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은 외국인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
 - ☞ '23. 1. 1부터 시행

05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시 고용허가 연장

-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시 고용허가기간 연장 허가
 - 외국인고용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재고용 허가를 받아 취업활동기간이 연장된 경우 고용허가 연장 근거 마련(동법 제9조 제4항 및 시행령 제17조)
 - ☞ '23. 2. 3부터 시행

06 기타사항

- 건강보험료율 인상 : ('22년도) 6.99% → ('23년도) 7.09%
 - ※ 사업주 및 근로자 각각 3.545%씩 부담
- 건설업 월평균임금 인상 : ('22년도) 4,438,528원 → ('23년도) 4,647,165원
 -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월평균보수 고시
- 장애인 고용부담 기초액 인상 : ('22년도) 1,149,000원 → ('23년도) 1,207,000원
 - ※ 장애인고용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을 위한 기초액 고시
- 최저임금 인상 : ('22년) 9,160원 → ('23년) 9,620원(월 환산액 2,010,580원)
 - ☞ '23. 1. 1부터 시행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05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연장 안내

행정안전부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 7월 1일부터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를 도입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금리 인상 등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특례 적용기간을 2023년 6월 30일까지 재연장 고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01 특례 주요내용

- 경쟁입찰에 입찰자가 1인일 경우 수의계약 허용
 - 기존의 경우 재입찰 이후(입찰자, 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
- 입찰보증금 50% 인하
 - 입찰금액 대비 5/100 → 2.5/100 이상
- 계약보증금 50% 인하
 - 계약금액 대비 15/100 → 7.5/100 이상
- 계약이행보증금 50% 인하
 - 계약금액 대비 40/100 → 20/100 이상
- 검사기간 단축
 - 완료통지일로부터 14일 → 7일 이내
- 대가지급 기한 단축
 - 청구일로부터 5일 → 3일 이내

02 특례기한 연장

- (중전) 2022. 12. 31 → (연장) 2023. 6. 30까지
 - ※ 특례운용 및 연장 목적 :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금리인상 등 지역 중소기업 상황 고려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06

지방자치단체 공사 적격심사 평가시 선금의 부채산정 제외 한시적 특례 연장 안내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재무비율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시 선금을 부채산정에서 제외하는 한시적 특례 기간을 연장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01 적용대상 :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모든 공사

02 선금대상 :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계약법 적용·준용기관에서 받은 공사의 선금 중 일찰공고일까지 정산되지 않은 선금

03 평가항목 : 부채비율, 유동비율

04 적용방법

- 지급받은 선금은 부채산정에서 제외
- 선금 수령액 중 기성 준공에 따른 정산액은 선금의 부채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05 특례 적용기간 : 2023. 6. 30까지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07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예규)」 개정 안내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01 다수의 개별 예규를 공통적용 예규 중심으로 통·폐합하여 체계 간소화

- (현행) 총 7개의 예규 (공통2, 개별5) → (개선) 총 2개의 예규 (공통2)

0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계약심사제도 운영의 자율성 제고
 - (현행)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 등 계약심사 의무화
 - (개선)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 계약심사 임의화
 - ※ 시행일 : '24. 4. 1 부터 적용
- 선금 사용 후 사용내역서 의무제출 완화
 -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적정히 완료한 경우, 부담 완화를 위해 선금 사용내역서 제출 면제
- 선금 공사규모별 의무지급률 삭제
 - 30% 이상 의무지급
 - 30% 이하 지급요청 시 신청한 대로 지급 가능
- 주계약자 공동계약제도 발주방식 변경
 - (현행) 발주자 지정 → (개선) 입찰참가자가 선택
 - * 주계약자 관련 개정사항은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여 2024. 1. 1 이후 최초 입찰공고부터 적용
- 계약담당자 금지 및 주의사항 추가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 등으로 인해 적격심사 대상자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 입찰보증금 귀속 금지
 - 장기계속공사 공기 연장 신청 시, 자치단체가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현장관리비용 지급 회피를 위해 중도에 계약 해지하지 못하도록 금지 규정 신설
 - 물품·용역·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시 계약담당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공사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목적물이 공사가 명백함에도 물품·공사 또는 용역·공사의 혼재된 계약으로 판단하여 물품 또는 용역으로 발주하지 않도록 주의

0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 기술자보유현황 등 수행능력상 결격사유 평가항목 추가

04 시행일 : 2023. 1. 1 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01

건설·건축현장 작업자의 전력선 접촉·감전 안전사고 예방 홍보 안내

부산시회는 건설·건축현장에서 전력선 근접 작업시 안전 유의사항에 대한 한국전력공사의 홍보자료를 안내 하며 회원사의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 전력선 접촉·감전 안전사고 예방 홍보자료 주요내용
 - 건설·건축현장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유형·사례
 - 전력선 근접 작업 시 작업감시자 배치
 - 전력선 근접 작업 시 전력선과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
 - 전력선 근접 작업 시 반드시 한전에 사전 연락(국번없이 123)하여 건축용 방호관 설치 등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안전조치 전에는 작업 금지

※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02

공정거래위원회, 「최근 하도급법령 개정사항」 안내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산, 울산, 경남에 소재한 사업자 등의 각종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법의 이해를 위한 ‘최근 하도급법령 개정사항 교육자료’ 홍보를 요청함에 따라, 부산시회는 회원사에 동 교육자료를 안내했다.

01 주요 내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요청 절차 및 의견수렴 절차 구체화
 - 사업자 등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을 심사 청구할 수 있고 공정위는 6개월 내 심사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
-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개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문위원 위촉 가능
 - 하도급거래 분야 전문가 및 관련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이 심사를 위한 회의 참석과 충분한 의견제시 및 효율적인 심사
- 보존 서류 대상 확대
 - 보존 서류 대상에 대금산정 기준에 관한 서류 및 명세서를 명시하여 부당한 대금결정을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증거자료로 활용
-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추진
 -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침공상태 등을 거치면서 주요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였으나, 수급사업자는 거래 단절 등의 우려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이 어려움
 - 사전에 정한 연동 조건을 통해 원재료 가격 변동을 쉽게 반영 및 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 위험분담

02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 및 문의

-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051-460-1041)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03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모집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기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건축물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동 사업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상시 모집하고 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참여하는 등의 다양한 혜택이 있다.

● **그린리모델링이란?**

- 에너지 소비가 많고 오래된 기존 건축물을 에너지 비용이 절감되는 쾌적한 건물로 리모델링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 창출과 일자리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인정을 받은 사업

● **신청기간** : 상시접수·등록

- 분기별 1회 이상 등록요건 부합여부 확인 후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지정

● **등록신청 및 제출서류**

- 등록신청 : 그린리모델링 홈페이지(www.greenremodeling.or.kr) 온라인접수
- 제출서류 : 동 홈페이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모집 공고문 참조

● **기타사항**

- 사업자등록 유효기간 :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2년
- 문의 :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1588-8788, 1600-1004)

04

달비계 사망사고 사례 공유 및 예방조치 철저 안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달비계 관련 사망사고 사례 및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마련하였기에 부산시회는 관련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하며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01 **최근 달비계 관련 사망사고 사례**

- (22.10.12. 평택) 아파트 옥상에서 달비계 로프정리 중 화단으로 떨어짐
- (22.10.10. 인천) 아파트 외벽 물청소 작업 중 달비계 작업로프가 파단되며 떨어짐
- (22.9.29. 부천) 아파트 옥상에서 달비계에 탑승하던 중 균형을 잃고 떨어짐
- (22.9.26. 서울) 아파트 옥상에서 로프설치를 위해 스틸그레이딩을 들어 올리던 중 떨어짐
- (22.9.18. 서울) 빌딩 외벽 유리창 청소작업 중 달비계 작업로프가 파단되며 떨어짐

02 **(안전보건규칙 제63조제2항) 작업의자형 달비계 작업 관련 (*21.11.19 시행)**

- 꿩김·손상이 있거나, 2개 이상으로 이어진 섬유로프를 사용하지 말 것
- 섬유로프는 2개 이상의 견고한 고정점에 풀리지 않도록 결속(結束)하고 구멍줄은 다른 고정점에 결속하며, 풀림방지조치를 할 것

- 섬유로프와 구멍줄이 절단·마모되지 않도록 덮개 등 보호조치를 할 것

- 달비계의 작업대는 견고한 구조로 제작하며, 4개 모서리에 로프를 매달 것

- 근로자는 안전대*를 착용하고 구멍줄에 연결할 것

* 지나치게 오래된 안전대를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22.2.8. 노후 안전대 파손으로 1명 사망)

- 관리감독자는 장비의 결손 여부, 고정점 매듭, 개인보호구 등을 확인하고, 작업진행 상태를 감시할 것

03 (KOSHA GUIDE) 작업의자형 달비계 안전작업 지침 (`22.03月 시행)

- 주요 개정 사항
 - 안전보건규칙 개정에 따른 용어 및 규정 현행화(ex. 달비계 → 작업의자형 달비계 등)
 - 작업용 로프 및 구명줄 규격 추가
 - 작업대(나무판) 외 작업대의 구성요소 검사 근거 추가
 - 작업 중 작업감독자 상주관리 근거 마련
-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 검색·내려받기 방법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자료마당 → 법령/지침정보 → 안전보건기술지침 → 검색

※ 자세한 사항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05

소화설비 작동에 의한 이산화탄소 질식재해 사례 안내

부산사회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에서 제작한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자료」를 회원사에 안내했다.

아울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전문가가 사업장(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산소·유해가스 농도측정, 안전교육, 질식재해예방 장비대여 등 종합서비스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회원사에서는 필요시 작업 전 신청(☎1644-8595)하기 바란다.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06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배포자료 안내

`22.1.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건설현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으며, 전문건설업의 경우에도 하도급 공사금액이 50억원을 넘는 경우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 `24.1.27.부터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이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문건설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자율점검 등을 이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 및 중대산업재해, 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 자료집을 제작하였기에 부산사회는 관련 자료를 회원사에 안내했다.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07

건설부조리 및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한 신고 안내

부산시회는 회원사의 고충해결을 위해 건설업 무등록자들의 불법도급 행위 등 건설부조리 행위와 원사업자(종합건설업체)로부터 겪고 있는 각종 하도급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에서는 상시적으로 건설부조리 및 하도급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고 있으며, 건설부조리 및 하도급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 활용할 것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 **신고하는 곳** :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051-633-0260, FAX : 051-633-0261)
- **신고기간** : 상시 접수
- **신고방법**
 - 방문신고 : 우리사회 사무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30번길 30, 전문건설회관 4층)
 - FAX 신고 : 우리사회 사무처(FAX : 051-633-0261)
- **신고대상 및 유형**

○ **건설부조리행위 신고 유형**

- 전문공사를 건설업 무등록자가 도급(하도급 포함) 및 시공하는 행위
- 건설업등록 업종과 다른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행위
- 건설업체가 직영시공으로 위장하여 건설업 무등록자에게 시공하게 하는 행위
- 건설업체 이사로 등재한 후 소속 건설업체의 건설업등록을 이용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하는 행위
- 기타 건설부조리행위 등

○ **하도급불공정거래행위 신고 유형**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않거나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 추가공사 지시 또는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으나 반영하여 주지 않는 행위
-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시 부당특약 유형을 설정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주지 않는 행위 등 각종 하도급불공정거래 행위

- **신고서식** : 우리사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 회원전용공간 → 불법·불공정행위 신고」에 게재

08

건설기술인 현장배치의무 점검 강화에 따른 사전조치 안내

최근 부산지역의 경우 건설현장의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적인 건설기술자 이중 배치를 포함한 상시적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의무 준수 여부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과 동시에 해당 위반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31조(건설기술인 현장배치 및 확인)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당해 공사의 공중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을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로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시행령 별표5)에 따라 건설공사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하며, 배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사 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의 현장이고 동일한 종류의 공사 또는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해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에는 현장별 발주자의 승낙을 모두 받아 1인의 건설기술인이 최대 2개의 공사현장까지 중복하여 배치될 수 있다.

이에 부산시회에서는 11월 4일, 회원사에서 불법적으로 건설기술자를 다중 배치하거나 부적합한 건설기술인을 배치하는 사례 등으로 인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벌금 등이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09

2022년 한파 대비 한랭질환 예방가이드 안내

부산시회는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공하는 「건설업 한파 대비 근로자 보호를 위한 한랭질환 예방가이드, Quick Guide, 사업장 자율점검표」를 회원사에 안내했다.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10

건설사업자 직접시공의무 및 건설기술인 현장 배치 등 사전 조치 안내

최근 발주기관에서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위반, 건설기술인 이중 배치를 포함한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 행위에 대하여 대대적인 점검에 나서고 있다.

이에 우리시회에서는 11월 30일,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사업자로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주요 의무사항에 대하여 회원사에서 안내하였다.

① 건설공사 직접시공 의무(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5)

- 건설사업자(수급인)는 1건 공사금액이 70억원 미만인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시공하여야 하며, 직접시공계획서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구분	비율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50%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30%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20%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경우	10%

• 위반시 제재사항

- 도급금액별 일정비율 이상을 직접시공을 하지 않은 건설사업자 :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의 100분의 30 이하 과징금(동법 제82조 제2항 제2호)
-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건설사업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99조 제4호)

02 건설기술인 건설현장 배치의무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31조)

- 건설사업자는 당해 공사의 공중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을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로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시행령 별표5)에 따라 건설공사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고, 배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공사예정금액 5억원 미만의 동일 종류의 공사(동일한 시·군과 제주도의 지역에서 행해지는 공사 또는 시·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의 공사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및 이미 시공 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해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는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인의 건설기술인을 최대 2개의 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음

• 위반시 제재사항

- 시정명령(동법 제81조 제7호)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동법 제82조 제1항 제5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97조 제4호)

03 건설공사 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6항, 시행령 제26조)

-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
- 도급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중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계약 체결일 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www.kiscon.net)

• 위반시 제재사항 (동법 제100조 제1호)

- 시정명령(동법 제81조 제3호)
- 시정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1차 : 100만원, 2차 : 200만원, 3차 이상 : 400만원(동법 제99조 제3호)

04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 시행령 제64조의 3, 시행규칙 제34조의 4)

- 수급인(원사업자)또는 하수급인(수급사업자)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현장별이 아닌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지급보증서 교부가 가능한 경우
 -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인 경우
 - 하도급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기재된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기준
 -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발주자·건설업자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
 -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1개의 건설현장에서 동일한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 위반시 제재사항

- 시정명령(동법 제81조 제4호)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동법 82조 제1항 제8호)

05 건설업 등록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제2항, 시행령 제12조의3, 시행규칙 제9조)

-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사항 중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법인(주민)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 **위반시 제재사항**(동법 제100조 제1호)
 - 과태료 1차 : 30만원, 2차 : 50만원, 3차 이상 : 50만원

06 하도급 등의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 시행령 제32조)

- 하도급을 한 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날부터 30일 이내 발주자에게 통보
- 다시 하도급 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승낙한 날부터 30일 이내 발주자에게 통보
- 하도급계약 등을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도 30일 이내 통보
- **위반시 제재사항**(동법 제99조 제5호)
 - 과태료 1차 : 100만원, 2차 : 150만원, 3차 이상 : 150만원

11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사업장 지도 점검 결과
협조사항 안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에서 2022년도 관내(동래구, 금정구, 수영구, 해운대구, 기장군)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주요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있어, 노동관계법을 준수하고 노무관리에 참고할 수 있도록 부산시회는 관련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01 유의사항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경우 1년에 1회 이상 전체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 교육일시에 연차휴가 사용 등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경우 추가 교육을 실시하여 누락되는 인원이 없도록 주의
-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요 근로조건(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 휴가, 근무장소 담당업무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도 근로계약서를 새로 변경 작성
-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신고
-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3개월마다 회의 개최
- 연장, 휴일근로가산수당 산정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일 경우 주휴수당 지급 대상임
- 임금명세서에 임금항목, 산정내역 등 필수항목을 기재하여 교부

02 문의처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최은미 근로감독관 ☎051-559-6657)

12

2023년 설 명절 대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설치·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설 명절을 앞두고,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신속히 처리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01 **운영기간** : 2022. 11. 28 ~ 2023. 1. 19

02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T : 051-460-1042, F : 051-460-1004)

03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주요 사례**

-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을 장기어음 등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어음대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초과)하는 행위
-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현금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일(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보다 장기의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 등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13

(법무부) 불법 외국인 고용주에 대한 고용제한 특별 해제 안내

우리협회는 건설업 외국인력 활용 관련 현장 애로사항 해소와 외국인 고용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대통령직인수위 국정과제 건의('22. 3월),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엄단 촉구 탄원('22. 6월, 대통령실, 국회 등), 중기중 고용노동부장관 간담회('22.10월), 국민의힘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건설현장을 위한 간담회」('22.11월) 등

이에, 법무부는 건설현장의 인력난을 겪고 있는 전문건설업체에 합법적 외국인력 고용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외국인 고용제한 특별 해제 조치를 시행('22.12. 5.)하였다.

다만, 이번 고용제한 해제 이후 외국인 불법고용으로 「출입국관리법」위반이 적발되는 경우 기존과 같이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므로, 부산사회는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활용하고 현장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회원사에 당부했다.

<고용제한 특별 해제 조치 주요내용>

- 외국인 단순 불법고용(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근무처 변경·추가허가 없는 고용)으로 '22. 12. 4까지 범칙금 또는 벌금*을 정상 납부한 고용주에 대하여 고용제한 특별 해제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또는 체류허가, 근무처변경·추가허가, 체류자격변경허가 등 신청 가능
- * ① 500만원 이상 벌금 또는 범칙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3년간 고용제한
- ② 500만원 미만 벌금 또는 범칙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1년간 고용제한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14

2023년도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행계획 안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계획이 확정·공고 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15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시행 안내

2022. 12. 1부터 시행되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연면적 15,000㎡ 이상 등의 건설현장에서 공사시공자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01 **관련법령**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02 **선임주체** : 공사시공자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의 건설공사를 하는 자

03 **적용시점** : `22. 12. 1일 이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하는 건축허가 (신청일 또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적용함)

04 **선임대상**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 합계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현장으로 소방시설 착공신고 대상

- 연면적 15,000㎡ 이상인 것
-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으로 지하 2층 이하인 것
-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으로 지상 11층 이상인 것
-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으로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냉장창고

05 **선임자격**

- (자격증)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취득자
- (교육수료)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06 **선임기간** : 건설현장의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07 **선임신고** :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소방서에 신고

08 **주요업무** : 건설현장에 대한 소방계획서 작성 및 화재예방 활동

09 **처벌기준**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기간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16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주요내용 안내

현행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서는 공사대금의 체불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19. 6월부터 「공공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를 의무화하여 시행해 오고 있으나, 공사대금 항목별, 지급대상자별로 구분하여 청구·지급하지 않는 위반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사대금이 청구 단계에서부터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가 수령할 부분을 구분하도록 하고,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각각의 수령자에게 지급되도록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을 `22. 1. 28일부터 의무화하였다.

부산시회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의무 규정 준수, 공사대금의 구분청구·지급 등 건설현장에서 공사대금이 투명하게 지급되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 주요내용
 - 공공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목적
 - 건설공사 대금을 투명하게 지급함으로써 체불 방지
 -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
 - 적용범위 : 공공공사 1건의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 초과하는 건설공사
 - 위반시 조치 : 시정명령, 영업정지(2~3개월) 또는 과징금(4~6천만원) 부과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17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도 관련 홍보물 안내

행정안전부에서는 각종 재난 발생 시에도 기업의 경영활동이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www.bcms.go.kr) 운영과 함께 동 제도에 대한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보급 중에 있다.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수립'이 침수, 화재, 시스템 붕괴 등 각종 재난으로 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수기업 인증을 통한 기업경영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취득에 회원사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아울러, 동 제도에 대한 홍보 영상 등 관련 자료는 '누리집(www.bcms.go.kr) - 자료실 - 홍보물'에 게시되어 있다.

18

콘크리트 단위수량 품질검사 관련 시공 및 관리감독 철저 안내

22. 12. 1부터 개정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KCS 14 20 10)가 적용됨에 따라, 건설공사 품질관리 주체는 '굳지 않는 콘크리트 받아들이기 검사'시 의무적으로 단위수량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 단위 수량 측정은 콘크리트 120m³ 마다 콘크리트 타설 직전 1회 이상 측정하며, 필요에 따라 품질관리자와 협의하여 측정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단, 120m³ 이하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 직전 1회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시행 중이던 설계용역 등에 대해서도 개정된 기준이 적용되니 회원사의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예외적으로 종전규정을 적용하는 현장이라도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표준시방서(KCS 14 20 01) 2.3.5 배합에서 정하는 단위수량 기준(185kg/m³ 이하)을 준수해야 한다.

19

(경찰청) 건설노조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에 따른 신고 안내

우리협회는 건설노조 불법행위의 철저한 근절과 회원사 권익 보호를 위해 건설노조의 채용강요, 부당금품 요구, 공사방해 등에 대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응을 정부 및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였다.

그 결과,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22.3.31)」을 마련하고, 후속조치로 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서 2023. 6. 25까지 200일간 건설현장의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특별단속 할 예정으로, 건설노조의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폭력 행위, 복지비 등을 명목으로 금전을 갈취하는 행위 등에 대해 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강도 높게 수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시회는 2022. 12. 13(화) 부산지방경찰청장이 주재하는 「건설현장 조직적 불법행위 단속·처벌 강화 유관단체 간담회」에 참석하여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따른 민·경 대응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부산지방경찰청장은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 및 강력범죄수사대와 일선 수사경찰을 투입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부산시회는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사례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노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01 경찰청 특별단속 실시기간 : 2023. 6. 25까지

02 신고방법

- 우리사회에 신고
 - 신고서 작성 후 팩스로 제출(fax : 051-633-0261)
 - 우리사회로 보내주신 신고내용은 익명으로 경찰청에 일괄 신고 예정
- 경찰청 신고(☎112), 부산경찰청 수사과(☎051-899-3067)

03 건설노조 불법행위 유형

- 소속 노조원 채용 강요
- 노조 소속 건설장비 사용 강요 및 장비임대료 담합 등
- 건설현장 출입구 봉쇄 및 불법집회 등
- 타워크레인 월레비 등 부당금품 요구
- 고의적 업무 태만, 태업
- 건설현장 착공시부터 각 산별노조에서 단협비 요구 등

※ 현재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 모두 신고 가능

20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공공계약 집행요령 안내

지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관련 물류차질로 인해 자재수급 불안 등으로 회원사에서 시공 중인 건설현장에 많은 피해가 발생되었다.

이에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에서는 건설사업자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공공공사 발주기관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 계약집행요령을 통보하였다.

따라서, 회원사에서는 참여중인 공공공사의 공사기간 연장, 계약금액 조정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활용할 것을 안내했다.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물류차질 대응을 위한 계약집행요령**

구분	내용	비고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물류차질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 조정	국가계약법 제19조, 영 제66조 제1항, 지방계약법 제22조, 영 제75조의2, 고시, 예규
지연배상금 부과 제외	상기 사유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연배상금 지체일수 산입 제외	국가계약법 제26조, 영 제74조 제1항, 지방계약법 제30조, 영 제90조, 예규

2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 제도 적극 활용 안내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의2(하도급계약 이행보증 등)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에 따라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적절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하며, 예외적으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발주자 원·하도급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하지만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 등 건설경기 불황속에서 일부 종합건설업체에서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의무를 면책 받기 위해 발주자와 원·하도급자 간에 하도급대금 직불에 합의한 것처럼 하여 하도급자(전문건설사업자)에게는 교부받은 것으로 키스콘(kiscon) 등에 통보를 강요하고 있다.

이에 부산사회에서는 12월 20일, 되도록이면 하도급 공사대금 확보가 용이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받도록 회원사에 안내하는 한편, 하도급대금지급합의서 작성하였다면 공공기관을 통해 확정일자를 지정 받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안내하였다.

22

건설현장 레미콘 등 품질관리 철저 안내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에 따라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건설자재에 대한 품질시험은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실시하거나, 동법 제60조에 따라 품질검사 대행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 반입되는 레미콘의 품질시험은 시공자가 아닌 레미콘 공장의 직원이 통상 실시하고 있어, 형식적인 품질시험으로 인한 양질의 품질 확보 곤란, 레미콘 공장의 부담 가중 및 객관성 부족 등으로 인한 사회적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여 건설공사 품질확보를 위해 현장에 반입되는 건설자재에 대해 시공자(건설사업자 등)가 품질시험·검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이 있어, 부산시회는 레미콘 등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건설자재에 대한 품질검사를 철저히 해줄 것을 회원사에 당부했다.

23

소액공사의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매입 면제 안내

행정안전부 및 전국 시·도에서는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 면제, 표면금리 인상 등 제도개선을 시행할 예정이다.

• 제도 개선사항

가.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신규·이전 등록시 : '23년 3월부터 채권매입 면제

나. 자치단체와 2,000만원 미만 공사·용역·물품 계약 시 : '23년 3월부터 채권매입 면제

※ 가, 나 항목의 경우 인천·제주는 '23년 1월부터 채권매입 면제 예정

다. 채권 표면금리(현재 1.05%, 서울 1.0%) : '23년 1월부터 2.5%로 인상

24

겨울철 공사장 양생작업 중 일산화탄소 중독 예방 조치 철저 안내

최근 콘크리트 양생작업 중 다수의 근로자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에서 철저한 일산화탄소 예방조치를 당부하고 2022.12 ~ 2023. 1월 중 건설현장 불시감독을 예고하여 부산시회는 관련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하며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 유해가스 농도를 수시로 측정하고 적정공기 상태를 확인한 이후 작업을 실시
- 불가피하게 작업을 하는 경우 산소호흡기나 송기 마스크를 착용한 후 실시
- 건설현장 관리자는 근로자가 보온양생 작업장에 출입하는 것을 철저히 관리

※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25

건설업 외국인 고용제한 전면해제 및 노조 입장대응 발표 안내

우리협회는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과 외국인력 합법 고용 환경 조성을 통한 회원사 애로사항 해소 및 권익 보호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의장 성일종)와 공동으로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건설현장을 위한 규제 개혁 간담회」를 개최(22.11.16)하고 그 후속조치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고용노동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 「건설현장 규제개혁 민·당·정 협의회」에 참여(22.12.20)한 결과,

정부가 우리협회의 건의를 전격 수용하여 전문건설업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사상 최초의 「외국인고용법」상 고용제한 전면해제 등 특별 개선 조치를 발표한 바, 부산시회는 주요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01 건설업 외국인력 고용제한 개선 대책

- 외국인 고용제한 전면 해제
 - 외국인 불법고용 악순환 해소를 위해 고용허가 없는 근로자 사용(건설업의 약 97%) 등에 따른 외국인 고용제한 전면 해제*
 - * (1단계) 고용제한 기간 3개월 이상 경과 업체(약 82%) → '23년 1월 1일부 즉시 해제
 - (2단계) 고용제한 기간 3개월 미만 경과 업체(약 18%) → 고용제한 기간 3개월 경과 시점에 해제
 - ※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고용제한 기 해제(22.12. 5)
- 고용허가제 쿼터 확대
 - (H-2) 전 산업 26만명 쿼터 중 건설업 6만명으로 제한한 취업허가 인정서 발급한도 폐지(22.12.27 확정)
 - (E-9) 건설분야 쿼터 확대 및 탄력 배정*
 - * (22년) 1,813명 → (23년) 3,000명(+1,187명) 및 1만명 탄력배정 운용

02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대책

- (대통령)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주요 국정운영과제로 추진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적극 대응 방침
 - ※ 노조 불법행위 배후·주동자까지 엄정 사법처리
-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추진체계 강화
 - (국조실) 관계부처 합동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 운영중으로 이행점검회의 등 지속 추진
 - ※ 전국 실무협의체 상시 운영, 현장 정기점검, 추진현황 지속 점검
 - (경찰청)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시 관계부처 (고용부, 공정위 등) 협조 강화 및 구속수사 원칙 등 엄정 대응
 - ※ 특별단속(23. 6.25까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행위 근절 추진
 -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팀」(전담 대응팀) 구성·운영 및 건설기계 조종사의 부당금품(월레비 등) 근절 추진

26

2022년도 건설(전문)공사 실적신고 및 2023년도 시공능력평가 안내

부산시회는 2022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접수는 2023. 2. 15(수)까지 방문 및 인터넷 접수하며,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결산 재무제표 증명원의 경우 2023. 4. 17까지(개인의 경우 2022. 5. 31.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접수 바람.

※ 2022년 실적신고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 신고업체의 건설공사실적, 재무상태, 기술능력, 대외 신인도 등을 기준으로 함.

2022년도 건설(전문)공사 『실적신고 교육 동영상』안내

『실적신고 동영상 가이드』는 우리협회 인터넷실적신고시스템(<https://esingo.kosca.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부산시회에서 개최한 「2022년도 건설(전문)공사 실적신고 온라인 강습회」영상은 부산시회 유튜브 브채널(KOSCA부산)에서 확인 가능하오니, 실적신고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능력평가 제도

- 1차 실적신고 : 실적평가 → 기술능력평가 → 신인도평가
- 2차 실적신고(경영평가)
- 실적신고절차
-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안내

• 실적신고 시스템(esingo.kosca.or.kr) 입력방법

- 실적신고 홈페이지 : esingo.kosca.or.kr → 로그인(아이디 또는 공인인증서) → 실적신고 동영상 가이드 영상시청 or 실적신고 가이드

• 2022년도 근로소득 인원조사서 작성방법

- 동영상 자료 및 서식 작성요령:부산시회 홈페이지 www.kosca21.or.kr → 회원전용공간 → 교육교재 → 근로소득 인원조사

01 주의사항

- 실적신고는 반드시 협회 실적시스템(<https://esingo.kosca.or.kr>) 작성·제출하여야 됨(수기 제출 불가)

※ 2022년 1월 1일부터 발주되는 공사는 공사유형을 신설 및 유지보수로 구분하고, 유지보수공사 실적은 건설산업정보원(KISCON)으로 신고하되 상기 일자 이전 발주공사는 유형 구분없이 협회로 신고

- 유지보수공사 실적신고시스템 : <https://mws.kiscon.net>

※ 실적 부문 외 경영·기술능력·신인도평가와 관련된 사항 등은 협회로만 신고(건설산업정보원 신고사항 아님)

• 건설공사 실적신고 서류의 제출기한은 2023년 2월 15일까지임. 단, 재무제표에 한하여 2023년 4월 17일 까지(개인업체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시공능력평가가 불가

• 2022년도에 공사실적이 없는 업체의 경우에도 반드시 무실적으로 실적신고를 하여야만 시공능력평가를 받을 수 있음.

※ 유지보수공사 실적만 보유한 업체의 경우에도 관련 현황을 등록하고 협회에 실적 외 평가항목 관련 사항을 신고·제출해야 시공능력 평가를 받을 수 있음.

- 신고기간내에 접수한 내용(공사실적, 재무제표, 기술인 등) 이외에 누락된 내용이 있을 경우 접수기한 이후 추가 접수 불가
- 기성실적증명서【서식6-1】는 실적증명자(발주자 또는 수급인) (상호, 대표자,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주소)가 누락 없이 기재된 경우만 인정됨.
-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 포함),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가가치세(비)과세표준증명원은 반드시 세무대리인의 확인(각장 마다 날인 또는 간인)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결산재무제표의 경우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에 건설공사 매출과 기타겸업 매출액으로 구분기장되어 있어야 함.
- 보유업종이 2개 이상인 경우 업종별로 구분하여 신고하되 반드시 (하)도급 받은 건설업종으로 건설공사 실적을 건별 입력(기재)함.
- 해당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속하는 건설공사를 다른 업종으로 신고하는 경우 건설공사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허위실적신고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함.
- 상호시장 진출로 종합공사를 도급·하도급 받은 경우에는 종합공사로 신고해야 종합공사 실적 관리를 받을 수 있음.

02 2023년도 시공능력평가·공시 절차

- **실적신고 교육 동영상**
 - 실적신고 작성안내서 수령 및 실적신고 교육 동영상 숙지
- **실적신고서 온라인 작성(<https://esingo.kosca.or.kr>)**
 - 실적신고서 시스템 로그인(<https://esingo.kosca.or.kr>)
 - 실적신고 자료 입력(업체현황, 공사실적, 기술능력, 신인도, 통계조사 항목)
- **실적신고 증빙서류 준비 및 확인**
 - 공사실적 증빙서류 준비 및 확인
 - 기성실적증명서 확인(발주자 또는 원도급자)
 - 건설공사 직접시공분 기성실적 증명(신청)서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 기술능력평가 증빙서류 준비
 - 건설기술인자격증 사본(기능사), 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기술인협회 발행) 등
 - 4대 사회보험 확인서류
 -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세무대리인 확인필) 준비
 - 기술개발투자비지출확인서 등
 - 신인도평가 증빙서류
 - 신기술지정, 우수건설업체, 해외건설현장고용확인서 등
- **신고서류 접수 및 출력**
 - 온라인 접수 / 실적신고서류 출력 및 편철
 - 각종 증빙서류 첨부
 - 제출서류 및 미비서류 유무 확인, 납부 할 회비 확인
 - 협회 실적신고
 - 공사실적 : 2023년 2월 15일(수)까지
 - * 인터넷 신고 서류제출 : 방문 또는 우편 2023년 2월 15일 도착 분까지 유효
 - 재무제표 : 법인 2023년 4월 17일(개인 : 2023년 5월 31일)
- **공사실적 확정**
 - 공사실적 확정 및 증명발급 : 2023년 6월 1일(목)

• 경영상태평가 확정

- 경영상태평가 확정 및 증명발급 : 2023년 7월 3일(월)

• 2022년도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 시공능력평가액 공시 : 2023년 7월 말(예정) (공시방법 : 협회 정보통신망)

- 시공능력평가액 기재 : 2023년 8월 1일(화)부터

0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의 평가 방법

【시공능력평가액 = 공사실적평가액⁽¹⁾ + 경영평가액⁽²⁾ + 기술능력평가액⁽³⁾ ± 신인도평가액⁽⁴⁾】

• 공사실적평가액

공사실적평가액 =
(최근 3년간 해당업종의 건설공사실적 연차별 가중평균액÷해당업종별 영위기간의 인정계수) × 70/100

※ 인정계수 : 1년 미만=1, 1년 이상 3년 미만=건설업영위월수/12, 3년 이상=3

※ 건설업영위월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절사함

※ **최근 3년간 해당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

【(평가년도 이전 1차년도 공사실적액×1.2)+(평가년도 이전 2차년도 공사실적액×1)+
(평가년도 이전 3차년도 공사실적액×0.8)】÷ 3

- 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④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고 직접 시공한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국토교통부령 제614호, 2019. 3. 26), 2019. 8. 1시행】
- 직접 시공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실적으로 합산할 수 있다. (직접시공한 금액에 대하여 발주자의 확인서를 제출)

• 경영평가액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80/100

(1) 실질자본금

-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한다.
- 건설업외의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자인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되, 평가년도 직전년도에 건설업을 신규로 등록한 경우 산정된 실질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 이하인 때에는 등록기준상 자본금을 실질자본금으로 한다.

① 차입금의존도평점 = 업계전체가중평균비율 ÷ 차입금의존도비율

【차입금의존도비율 = 차입금/총자산 × 100】

② 이자보상비율평점 = 이자보상비율 ÷ 업계전체가중평균비율

【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이자비용 × 100】

③ 자기자본비율평점 = 자기자본비율 ÷ 업계전체가중평균비율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본 × 100】

④ 매출액이익율평점 = 매출액순이익율 ÷ 업계전체가중평균

【매출액순이익율 = 법인세(소득세)차감전 순이익/매출액 × 100】

⑤ 총자본회전율평점 = 총자본회전율 ÷ 업계전체가중평균비율

【총자본회전율 = 매출액/총자본】

• 참고사항: **차입금 항목(예시)**

유 동 부 채	비 유 동 부 채
관계회사단기차입금	관계회사장기차입금
단기차입금	교환사채
단기사채	국민주택기금(차입)
단기용자금	금융리스미지급금
당좌차월	금융리스부채
어음차입금	금융리스장기차입금
유동성사채	사채
외화단기차입금	신주인수권부사채
유동성금융리스미지급금	외화금융리스부채
유동성금융리스부채	외화사채
유동성외화장기부채	외화신주인수권부사채
유동성장기차입금	장기외화차입금
유동성장기부채	장기용자금
유동성장기채무	장기차입금
유동성외화장기차입금	전환사채
유동성전환사채	주주임원종업원장기차입금(채무)
주주임원종업원단기차입금	차관
가수금	가수금
위 계정과목의 차입금	위 계정과목의 차입금

$$\text{경영평점} = (\text{①차입금의존도평점} + \text{②이자보상비율평점} + \text{③자기자본비율평점} + \text{④매출액순이익률평점} + \text{⑤총자본회전율평점}) \div 5$$

- 이 경우 각각의 평점이 3점을 초과할 때 ‘3’, -3 이하인 때에는 ‘-3’으로 함.
- 업계전체가중평균비율은 **이자보상비율, 자기자본비율 및 매출액순이익률** 중 ‘0’ 이하인 비율을 제외함
- 경영평점이 3을 초과한 때에는 ‘3’으로, -3 이하일 때에는 각각 ‘-3’으로 함
- 경영평점이 0 미만일 경우 경영평가액은 ‘0’이 되도록 평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 미만인 때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2) 위 경영평가액의 산식 중 실질자본금이 ‘0’ 미만인 때의 경영평가액은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3) **공사실적평가액이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보다 적거나 많은 경우**
 - 공사실적평가액이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의 ±6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공사실적평가액이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 이상인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공사실적평가액의 ±6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 기술능력 평가액

$$\text{기술능력평가액} = \text{기술능력생산액(전년도 동종업계의 기술인 1인당 평균생산액} \times \text{보유기술인수} \times 30/100) + (\text{퇴직공제납입금} \times 10) + \text{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액}$$

(1) 기술능력생산액

- 실질자본금의 2배 또는 공사실적평가액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함
- 전년도 동종업계의 기술인 1인당 평균생산액
전문건설업계의 국내 총기성액을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기술인의 총수로 나눈 금액
- 보유기술인수 : 매 연도말 현재 해당업종의 건설업 등록기준에서 인정하는 기술인수

건설기술인 반영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인
- 초급기술인 : 초급기술인 수 × 1인	-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장, 기능사, 기능사보 : 기술인 수 × 1인
- 중급기술인 : 중급기술인 수 × 1.15인	
- 고급기술인 : 고급기술인 수 × 1.3인	
- 특급기술인 : 특급기술인 수 × 1.5인	

- 건설업체 설립시 그 대표자가 최초 건설업 등록일 기준으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의 가입경력이 5년 이상이고, 공제부금을 500일 이상 납부한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국토교통부령 제 614호, 2019. 3. 26), 2019. 8. 1시행】
 - 대표자가 최초로 건설업체를 설립하여 건설업을 등록한 날이 속한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에 한정하여 그 건설업자가 보유한 기술인 중 해당 업종의 건설업등록기준에서 인정하는 기술인에 대해서는 현행 가중치에 2를 각각 곱하여 산정함
 - 기술능력생산액은 실질자본금의 4배를 초과하지 아니함

(2) 퇴직공제 납입금 × 10

- 퇴직공제납입금은 전년도 중,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공제부금으로 납입한 금액

(3) 기술개발투자액

- 기술개발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해당 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 발생 명세상의 금액 중 건설업에 실제 사용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실질자본금과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50 중 큰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신인도 평가액

신인도 요소별 평가액의 합계액은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30/100[(8)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0/100]을 초과할 수 없음

(1) 신기술의 지정, 우수건설업자 지정된 업체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건설공사와 관련된 신기술로 한정)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건설기술진흥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자인 경우 최근 3년간 공사실적 연차별 가중평균금액의 2/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더함
- 이 경우 동일분야에서 2개 이상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함

(2) 건설업 영위기간

- 동일업종의 전문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더함

(3)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업체

- 직전영업연도에 법제82조제1항1호·제2항 제5호 제82조의2 및 법제83조 제10호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 최근 3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영업정지기간(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에 상응하는 영업정지 기간)인 월수를 곱한 금액을 뺀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1호(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할 때) / 제2항 제5호(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 제82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으로 영업정지 등을 받은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0호(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惹起)하여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4) 기준재해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6호)

- 직전영업연도중에 평균재해율의 1~2배 이내의 재해를 발생시킨 업체의 경우 최근 3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3/100을 빼고, 평균재해율의 2배를 초과한 업체의 경우 최근 3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5/100을 뺀다.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평가시 공사실적액의 감액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

(5) 부도업체

- 최근 3년 이내에 부도가 발생한 건설업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6) 환경관리 및 건설폐기물 처리실태 우수업체 : <2021. 8. 31 삭제>

(7) 국내인력을 해외건설현장에 고용한 건설업자

- 고용인원수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더하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2/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금액의 2배를 더한다.
 - 고용인원수가 1~50명 미만인 경우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
 - 고용인원수가 50~500명 미만인 경우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1.5/100에 해당하는 금액
 - 고용인원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2/100에 해당하는 금액
- 고용인원수는 건설공사 실적신고 대상연도를 기준으로 하되, 3개월 이상 체류한 인력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업체가 고용하고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는 인력만 해당하며 하도급업체가 고용한 인력은 제외
- 해외건설촉진법 제23조에 따라 해외건설협회장으로부터 해외건설현장에 고용된 국내인력에 대하여 해외건설현장 인력고용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해외건설협회의 장은 출입국증명원,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확인서를 발급함

(8) 건설공사 실적 등의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허위제출 사실이 확인된 때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시공능력평가시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9) 상습체불업체

- 법 제86조의4 및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전년도에 상습체불건설업자 또는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건설업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뺐

(10) 건설기술인교육 이수한 자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평가기준이 직전년도에 건설기술인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술인 1인당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를 초과할 수 없음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따라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

- 평가년도 직전년도 중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뺐다.
 ※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및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

(12)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결과가 우수한 건설사업자

(국토교통부령 제627호, 2019. 6. 19)【2020. 8. 1시행】

- 제48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른 건설 근로자 고용평가 결과가 우수한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다음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함.

구분	등급배분 기준	고용평가등급	가산비율
전문건설업체	상위 30퍼센트 미만	1등급	5/100
	상위 30퍼센트 이상 상위 70퍼센트 미만	2등급	4/100
	상위 70퍼센트 이상	3등급	3/100

(13) 건설사업자가 민간공사 현장에서 일체형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 제704호, 2020. 3. 2)【2020. 8. 1시행】

: 평가년도 직전년도 중에 일체형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감리자 등의 확인서 제출

- 일체형작업발판 설치비율이 30% 미만인 경우 : 최근 3년간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일체형작업발판 설치비율이 30% 이상 40% 미만인 경우 : 최근 3년간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 일체형작업발판 설치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최근 3년간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2020년 1월 1일부터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

• 기타

-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건설업의 등록을 한 건설사업자와 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을 양수한 건설사업자의 당해연도 시공능력 및 다음연도 시공능력을 산정함에 있어서 경영평점은 '1'로 한다. 다만, 건설업을 영위하던 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의 등록을 하거나 건설업을 양수한 경우에는 이미 평가한 경영평점을 적용할 수 있음.
- (2) 20이상의 전문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거나 둘 이상의 주력분야를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시 업종별·주력분야별로 구분하여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신인도평가액을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 (3) 산정한 시공능력평가액이 '0' 이하인 경우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0'으로 한다.

04 실적신고 인터넷 접속 방법

- 2022년도 실적신고 시스템 접속(<https://esingo.kosca.or.kr>)
 - 공인인증서 또는 홈페이지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시스템 사용 환경】

Window10, Chrome 또는 Microsoft Edge, 네이버 웨일 등 사용 권장

※ 인터넷 익스플로러(IE)는 서비스 중단으로 사용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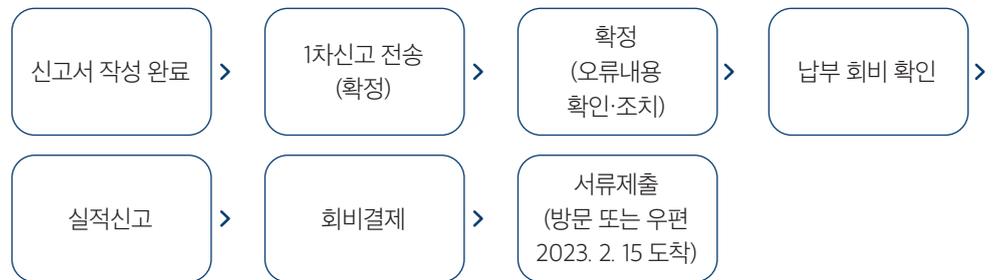
• **공사실적 관계서류(1차)신고 방법**

- 실적신고 담당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실적접수, 회비납부내역 등을 휴대폰 SMS로 안내)
- 홈텍스 자료 온라인 전송 버튼 클릭 후 부가세신고 자료 전송 필수
- ①'자료전송' 클릭 ⇒ ②동의 후 '확인 및 로그인' 클릭 ⇒ ③공동인증서 로그인 ⇒ ④'부가세매입매출처 합계표' 선택 후 전송 ⇒ ⑤'마침' 클릭 ⇒ ⑥전송내역 조회
 - ※ 국세청에 신고한 부가세 신고자료 전산 연계(2023.1.25.일 이후)
- 업체의 상호, 대표자, 등록번호, 전문건설 이외 인·허가에 대한 사항 입력 (상호변경, 합병, 양수 등에 따라 상호, 법인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변경된 경우)
- 기업회생 및 공동관리(개시일, 종결일, 사건번호 등)에 대한 사항 입력
- 업종별로 건설산업정보원(KISCON)에 신고(또는 신고예정)한 유지보수공사에 대한 기성금액 및 무실적 여부 입력
- 업종별로 공사 실적내역(공사명, 계약일, 발주자, 계약액, 기성액 등)에 대한 사항 입력
 - ※ 직전연도분(2021년)도 및 직직전연도분(2020년)의 전체 또는 일부공사 실적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누락된 실적만 입력해서 신고 가능, 중복 신고 불가
- 업체가 보유한 기술인에 관한 사항을 입력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에 인정되는 기술인으로서 2022. 12. 31 현재 자사에 재직 중인 기술인(임원이 기술인인 경우 포함, 일용 건설기술인은 제외)을 입력

- 경력건설근로자 창업우대
 - ※ 퇴직공제 가입경력 5년 이상, 공제부금 500일 이상 납부한 자가 건설업체를 설립한 경우 등록연도와 그 다음연도 시평에 한하여 보유기술인 현행 가중치에 2배 적용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 퇴직공제회에서 제공(입력 불필요)
- 국내인력의 해외건설현장 고용신고서 : 해외건설협회에서 제공(입력 불필요)
- 신기술, 우수건설업 지정,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내용 입력
- 시설·장비보유, 건설기술 보유현황에 대한 사항 입력(서식 출력 해당 아님)
- 전문건설업 통계조사 일반사항(자본금, 창설년월) 입력(서식 출력 해당 아님)

● 실적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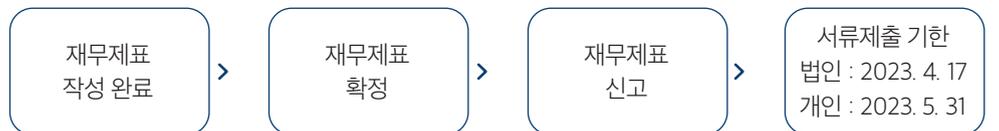


- 신고 완료 후 시스템에서 내용 수정 불가
- 실적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등기우편(또는 방문제출)으로 (2023. 2. 15 도착 분까지 유효) 제출

●결산재무제표(2차신고) 신고 방법

- 실적신고 담당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
-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를 입력
-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한 연구·인력개발비 중 건설업에 실제 사용된 금액 입력
- 총공사금액 1천5백만원 이상인 공사로 2022년에 완성된 공사를 공사현장별로 입력
- 전문건설업 통계조사 결산사항(인력고용, 급여 등) 입력

●재무제표확정



27

2023년 시공능력평가 주요 변경 내용

01 공사실적평가

- **공사유형(신설/유지보수공사)에 따른 건설공사실적 부문 신고기관 변경**
 - 국토교통부가 2022. 1. 1부터 발주되는 건설공사는 신설 및 유지보수공사로 구분하고 신설공사는 현행과 같이 협회로 신고하고, 유지보수공사는 건설산업정보원(KISCON)에 위탁하여 실적신고 이원화
 - 유지보수공사는 유지보수공사실적 신고시스템으로 신고하며 유지보수공사 실적 증빙서류(기성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합계표 등)는 건설산업정보원으로 우편 제출
 - 유지보수공사실적 신고시스템 : <https://mws.kiscon.net>
 - 접수처 : (06021)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307, 7층 건설산업정보원(백영빌딩)
- **실적신고 서류 거짓 제출에 대한 제재강화**
 - 실적신고 서류를 거짓 제출한 경우 그 사실이 확인된 때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시공능력평가 시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가중평균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02 신인도평가부분

- **신기술지정 신고에 따른 신인도평가액 가산**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 지정을 받은 (보호기간 내, 건설공사에 관련된 신기술에 한함) 업체는 신기술지정증서 제출시 최근 3년간 공사실적 연차별 가중평균금액의 2/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28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발표 안내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연장하고 방문취업(H-2) 건설업 쿼터를 폐지하는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발표('22.12.29) 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E-9 장기근속 특례 신설)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를 통한 숙련 형성, 한국어 능력 갖춘 외국인력 우대
 - 체류기간 우대*, 직업훈련 제공, 훈련 지원 등 추진
 - * (현행) 4년 10개월 → (개선) 최대 10년 체류 가능
 - ☞ '23. 2분기 내 개편방안 마련
- (H-2 건설업 쿼터 폐지) 건설업 6만명으로 제한한 H-2 취업허가 인정서 발급 한도(쿼터) 폐지
 - ☞ '23. 1. 1부터 시행
- (고용허가 신규한도 폐지) 총 고용허용인원 외 별도 운영 중인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폐지
 - * 해당연도 신규 고용허가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발급 한도 제한
 - ☞ '23. 1. 1부터 시행
- (지도·점검 강화) 외국인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장 지도·점검 확대*
 - * 매년 3천개 → 5천개로 점검대상 확대, 근로여건·산업안전 합동점검 실시
 - ☞ '23. 1. 1부터 시행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29

(공정거래위원회)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에 대한
사업자 단체 제재 안내

우리협회가 건설노조 불법행위의 철저한 근절과 회원사 권익 보호를 위해 건설노조의 채용강요, 부당금품 요구, 공사방해 등에 대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응을 적극 추진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의 경쟁 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 배제 요구 등 부당행위가 관철되지 않자 레미콘 운송 중단, 건설기계 운행 중단 등 부당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1억원)을 다음과 같이 제재하기로 결정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 단체 제재 주요내용>

-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적용법조) 구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4호 : 사업자단체가 사업자에게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거래거절)를 하게 한 행위
 - (제재내용) 피심인에 대한 재발방지명령, 구성사업자 등에 대한 법위반 사실통지 명령, 과징금 1억원 부과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노조 기계지부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제재한 첫 사례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단체임을 명확히 하고 건설기계대여 사업자단체의 부당행위를 제재함으로써 건설기계 대여시장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우리협회는 건설노조 불법행위의 철저한 근절을 위해 공정위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지속적인 엄정한 법집행 및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따라서, 부산시회는 회원사가 건설기계노조 등의 부당행위에 대해 대응할 수 있도록 동 사례를 안내하며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30

2023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 (시중노임단가) 안내

건설공사 예정가격 작성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노무비 산출근거로 활용되는 「2023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시중노임단가)」이 통계청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공표·승인(제365004호) 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01 조사개요

- **조사목적**: 건설부문에 고용된 기능직종의 시중노임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 건설공사 원가 산정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토록 함.
- **법적근거**: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365004호)
- **조사 기준기간**: 2022. 9. 1 ~ 9. 30
- **조사방법**: 자계식 우편조사·인터넷 조사와 타계식 현장실사 병행 실시
- **이용상의 주의사항**
 - 통계전반에 걸쳐 사용한 「-」의 기호는 조사되지 않았거나, 비교불능을 나타냄
 - 본 조사노임은 1일 8시간 기준(단, 잠수부는 6시간 기준) 금액임
 - 직종번호 앞의 「*」표시는 조사 현장수가 5개 미만인 직종, 「**」표시는 조사되지 않은 직종이므로 유의하여 적용

02 조사내용

- **평균임금현황**
 - 전체직종 : 255,016원[2022년 하반기(248,819원) 대비 2.49% 증가]
 - 일반공사 직종 : 244,456원(2022년도 하반기 : 237,006원)
 - 기타 직종 : 257,558원(2022년도 하반기 : 252,767원)
- **직종별 노임단가**: 부산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2023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 참조

03 2023년도 상반기 노임적용시점 : 2023. 1. 1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31

2023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 안내

부산시회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를 회원사에 안내했다.

01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 주요내용

- 스마트 건설기술 항목 신설
 - 건설기계 자동화 장비, 스마트 토공, PC구조물 원가기준 등
- 건설현장 안전 관련 기준 개선
 - 안전시설물 6종 원가기준 신설, 철도·궤도공사 임시신호기 계상기준 마련
- 소규모 건설공사 대상 품셈 적용 기준 마련
 - 인력·장비 투입기준 하한선 설정

02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개정 주요내용

- 현장조사를 통한 제·개정* 및 최근 8개월 물가지수** 반영
 - * 가설공사(토목/건축), 토공사, 포장공사, 수장공사 등 294공종
 - ** 1,372공종(생산자물가지수, 시중노임단가 반영)
- 토목부문 공종 개편 및 적용기준 개선
 - (토공사) 부대공 장비 투입 반영, 콘크리트 깨기 등 현장조건별 단가 신설 등
 - (도로 및 포장공사) 프라이밍코팅/택코팅, 기계식 살포 신설 등
- 건축부문 작업범위 및 단가구성 개선
 - 플로어링마루 등 신규단가 신설, 바닥재 및 도배 공종 적용공사 확대

03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개정 주요내용

- 유사공종별 군 평균증감율 반영 등 현실화* 및 지수** 반영 조정
 - * 사석투하, 사석정리 등 128공종
 - ** 176공종(생산자물가지수, 물가보정 지수 반영)
- 단가정의 수정 및 보완 등
 - 사석덤프적재 공종 단가정의 보완
 - 내부사석고르기 공종 수정·보완
 - 피복석고르기 및 피복석거친고르기 공종 작업선 현실화
 - 녹막이 및 조합페인트칠 공종 자재비 단가정의 명확화 등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자본금 중 예금의 예치기준

Q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자본금 예치기간을 정기예금 2013.12.10. ~ 2014.2.11.까지 예치를 하였는데 행정관서에서는 자본금 예치기간 부족으로 행정처분 한다고 합니다. 자본금 예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및 기업진단지침 제15조에 따라 예금은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으로 평가하며, 이 경우 30일 동안의 기산일과 종료일은 전체 예금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예금의 평가금액은 진단기준일 현재의 예금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예금은 진단기준일 현재의 예금잔액증명서와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간의 거래실적증명(신설법인의 경우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일까지 기간의 은행거래실적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하되, 허위의 예금이나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으로 확인된 경우는 부실자산으로 분류하고, 질권 설정 등으로 사용(인출)이 제한된 예금은 겸업자산으로 판단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본금 예치기간 부족여부는 상기의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법인의 신설여부, 기업진단 기준일, 법인의 부실 및 겸업자산의 존재 여부 등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처분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자료제공 「건설산업기본법 유권해석」 책자



공사미수금과 자본금 인정범위

Q 당사는 건설업체로 2014년도에 수주한 공사를 완료후 2014년 12월에 대금청구 세금계산서를 발부했으나 2015년 10월 금일까지 미수금회수가 종결되지않은 상황인데, 이 경우 부실채권으로 간주되어 자본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적법한 해석인지?

A 건설업관리규정(국토해양부 예규 제2015-113호)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7조에 따라 매출채권은 공사미수금과 분양미수금으로 구분되고, 거래상대방에게 세무자료에 의하여 청구한 것과 진행기준에 의하여 계상한 것을 포함하며 대손충당금을 차감하여 평가합니다.

또한, 매출채권(미수금)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산서의 청구와 금융자료에 의한 회수내역 등 회수의 실제성 확인을 통해 부실자산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동 지침 제17조 제4항에 따라 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매출채권은 부실자산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등록관청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자료제공 「건설산업기본법 유권해석」 책자



건설판례
01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884 판결 [장비사용료등], [공1994.11.1.(979),2855]

Q 판시사항

- 가.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이 표현지배인인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인지의 여부
- 나. 건설회사 현장소장의 통상적 업무범위에 그 공사시공과 관련없는 새로운 수주활동도 포함되는지 여부
- 다. 건설회사가 현장소장에게 회사의 부담으로 될 채무보증 또는 채무인수 등과 같은 행위를 할 권한까지 위임하였거나, 적어도 그 상대방으로서는 현장소장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A 판결요지

- 가.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회사의 업무는 공사의 수주와 공사의 시공이라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건설회사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업무만을 담당하는 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14조 소정의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 즉 이른바 표현지배인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단지 상법 제15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나.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의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는 그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자재, 노무관리 외에 그에 관련된 하도급계약 계약체결 및 그 공사대금지급, 공사에 투입되는 중기 등의 임대차계약체결 및 그 임대료의 지급 등에 관한 모든 행위이고, 아무리 소규모라 하더라도 그와 관련 없는 새로운 수주활동을 하는 것과 같은 영업활동은 그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 다. 일반적으로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에게는 회사의 부담으로 될 채무보증 또는 채무인수 등과 같은 행위를 할 권한이 회사로부터 위임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지만, 현장소장이 방대한 규모의 공사에 관한 하도급 계약과 그 공사에 소요될 장비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그 대금 등의 지급 등 어느 정도 광범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었고, 공사를 함에 있어서도 중기와 같은 장비를 구하기가 어렵고 장비가 투입이 되지 않으면 공사에 큰 지장이 초래될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에 투입되는 중기를 임차하는 데 보증을 하게 되었으며, 그 보증의 내용도 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중기임차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중에서 중기 임대료 등에 해당하는 만큼을 중기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겠다는 것이어서 회사로서는 공사대금 중에서 중기임대료 등에 해당하는 만큼을 직접 중기임대인에게 지급하면 그에 상당하는 하도급 공사대금채무를 면하게 되고 그 보증행위로 인하여 별다른 금전적 손해를 입는 것도 아니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로서는 현장소장에게 위와 같은 보증행위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사 그러한 권한이 위임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보증행위의 상대방으로서는 이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2022년 해외문화유산 탐방 기행문 <발칸 4개국>

경남종합조경 대표 **송유경**
(현)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제12대 부회장



‘여행’ 그것은 영혼을 요동치게 한다.

어릴 적 ‘소풍’을 떠날 때 느꼈던 설레임을 다시 느끼며, 7박 9일간의 발칸 4개국(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슬로베니아) 여정에 올랐다.

1989년 여행 자유화가 시작된 이후 찾은 첫 오스트리아 방문은 KAL기 폭파사건으로 도망치듯 빠져나온 기억으로 내게 남아있는 나라다. 그 후, 30년 만에 다시 찾게 되니 감회가 새로웠다. 13시간 30분의 긴 비행시간에 지칠 만도 하고 시차 적응도 해야 하는데 첫날은 설레는 마음으로 하얗게 밤을 지새웠다.

오스트리아 공화국 수도는 빈이다. 공용어는 독일어로 로마 카톨릭교가 우세 종교이다. 제조업이 GNP의 34%를 차지하며, 인구는 약 9,000,000명이다. 면적은 8만 3871Rm²로 우리가 여행한 그라츠는 유럽의 중심부이기도 하지만 유일하게 평지가 많은 곳으로 유명하다.

그라츠는 중세 도시의 면모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오스트리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다. 붉은 지붕이 인상적인 이 도시는 세계문화유산의 도시답게 전철과 함께 보행 친화적인 거리로 잘 정돈되어 있으며 도시 곳곳에 광장과 벤치가 잘 갖추어져 있고 자전거 도로도 잘되어 있었다.

걷기 좋은 도시 그라츠는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시계탑의 계단이 인상적이었으며, 메인 거리에 위치한 그라츠 시청과 곳곳에 세워진 동상들이 인상적인 도시로 기억에 남았다.

오스트리아를 빠져나와 처음 도착한 나라는 ‘아드리아 해의 숨은 보석’ ‘크로아티아 공화국’이다.

발칸반도 중서부에 있는 옛 유고슬라비아 연방을 이루던 나라였으나, 1980년대 말 개혁의 흐름 속에 1991년 6월 25일 독립을 선언했다.

수도는 자그레브이며 화폐는 쿠나를 사용하고 인구는 약 4,059,000명이다.

자그레브 대성당은 1093년 처음 건설되기 시작했는데, 1242년 타타르족의 방화로 완전파괴된 것을 이후 재건축하였지만 1880년 지진으로 인해 성당이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것을, 1889년에 지금의 모습으로 복원하였다.

108M의 쌍둥이 첨탑은 네오고딕 양식으로 지어졌으며, 아직까지 보수 중인지 일부는 철 파이프를 세우고 천막으로 가려져 있었다.

성당 앞 광장에는 성모상과 수호성인의 화려한 조각상이 인상적이었다.

다음으로 발걸음을 옮긴 곳은 크로아티아 최남단에 있는 ‘드브로브니크’다.

이 도시는 ‘아드리아해의 진주’라 불릴 정도로 환상적인 풍경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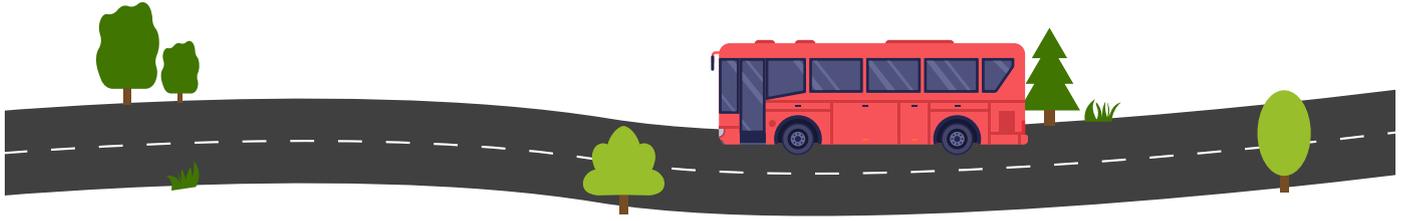
세계 각지에서 온 여행객이 ‘마린트리치즈 광장’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렉트궁전’을 지나 광장까지 이어지는 300M 골목길은 환상의 길 그 자체였다.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인 성벽은 13세기에 세워진 철옹성으로 이곳에서 보는 코발트색 아드리아해의 아름다움은 감탄과 함께 정겹기만 하다.

케이블카를 타고 산을 올라 내려다 본 아드리아해는 아직도 유고 내전의 흔적들이 여기저기에 남아있어 안타까움을 전한다. 많은 무고한 시민이 희생당한 곳이지만, 지금 구시가지는 평화롭고 아름다웠다.

렉트궁전은 1979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왕자의 침실, 왕의 방 등 크로아티아 역사와 문화가 곳곳에 빼곡히 남아있어 이국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플로드 비체’ 국립공원은 계단식으로 펼쳐지는 16개의 호수와 크고 작은 90개의 폭포수가 감탄을 자아내는 아름다운 세계문화유산 중 하나다. 많은 자연풍광을 보아왔지만 이렇게 멋진 풍경은 일찍이 본적이 없어서 감탄이 절로 나왔으며, 금방이라도 물의 요정이 나올 것만 같고, 한가로이 헤엄치는 물고기와 아기자기한 동굴들도 볼만한 풍경이다. 특히 버스를 기다리며 꼭대기에서 바라본 폭포는 새로운 장관의 연속이었다.

안내판에 6개의 다른 코스가 있다고 적혀있는데 일정상 다 가보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려야함에 아쉬움을 남기고, 국경을 넘어 보스니아로 향했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는 이름만큼이나 복잡한 나라다.

오랜 내전으로 아직도 주택과 아파트 벽 곳곳에 총탄의 흔들이 많이 남아 있었다.

대한민국의 1/2 크기로 1국가 2체제로 이루어져 있는 이 나라의 인구는 경상남도과 비슷한 3,255,347명이다. 대통령이 3명이라니 참 웃기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참 비극적인 역사를 겪은 나라였다. 민족 간의 갈등으로 인종청소라는 명목으로 집단학살이 자행되었다니, 20세기 최악의 학살이 자행된 곳에 머물자니 무섭기까지 했다. ‘스헤브니차’에서만 1만 명의 주민이 학살되었다고 한다.

집으로 돌아와 유고내전 기록물을 다시 찾아보니 잔인하다는 말로도 표현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이일이 불과 30년 전에 자행되었다니 인간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를 새삼 실감케 했다.

다행히 나토군의 개입으로 전쟁은 종식되었지만 아직까지 아물지 않는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었다.

구시가지의 모스타르 다리 주변에서의 식사는 아직도 아름다운 기억으로 잊혀지지 않으며, 내전의 산물인 총알과 칼 등이 이제는 기념품으로 팔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이러니 하기도 했다.

다시 차를 돌려 ‘크로아티아’로 향했다.

남도의 정취가 물신풍기는 해변의 타바거리 티오클레시안 궁전 내부와 열주와 성당들을 보면서 하루해가 저물었다.

도시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인 트로기르는 기원전 3세기경 버스섬에 살고있던 그리스인에 의해서 발견되었으며 긴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도시이다. 구시가지는 마치 미로처럼 얽혀있고 아가자기한 기념품가게가 정겹기만했다.

야자수가 많아 이국적 풍경도 기억에 남으며, 긴 벤치가 이색적이어서 멋진 풍경을 배경으로 사진도 몇장 찍어 보았다.

오후에는 아드리아해의 작은 항구도시 ‘자다르’에 도착했다. 자다르는 크로아티아의 교통의 중심지다. 항공, 페리, 기차, 버스 등 다양한 교통수단들이 이곳으로 모이며, 자다르에서는 크로아티아의 어디든 갈 수 있다.

‘성 아나스타샤’ 성당도 대단한 위용을 자랑하고, 바다의 파도가 만들어낸 천연오르간 소리는 마치 고대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번 발칸여행은 사방이 바다와 철책으로 막혀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국경이 맞닿아 있는 인접국을 이동하며 여러번 국경을 넘다 보니 여권 검사도 참 많이 했다. 단거리를 이동하기 위해서 심지어 20분 내에 두 국경을 넘나들 때도 있었는데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다.

슬로베니아는 웬지 유고연방의 공산주의 같은 느낌이 더 강하게 느껴졌다. 정식명칭은 ‘슬로베니아 공화국’이다. 면적은 약 2만 273R㎡, 인구는 1,982,412명으로 수도는 ‘류블랴냐’이다.

블레드섬으로 이동 중 가랑비가 내렸다. 차가운 바람과 빗방울이 드라쿠라 백작이 살고 있을 것 같은 스산한 느낌마저 들게 했다. 호수 한가운데 떠있는 블레드섬은 작은 섬이지만 성모마리아의 ‘승천성당’이 세워져 있고 바로크양식의 성당 내부에는 행복의 종이 있으며, 이 종을 치면 사랑과 행운이 온다고 해서 인기가 높는데, 슬로베니아인들에게는 결혼식 장소로 손꼽히는 곳이라고 한다.

아름다운 블레드섬의 경치를 뒤로하고 우리는 기나긴 여정을 마무리 하기 위해 다시 비엔나로 이동 했다.

아무런 사고 없이 여행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금씩 배려해준 57명의 봉사들과 협회 김세원 회장님, 협회 직원, 여행사 사장님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함께한 모든 분들의 기억 속에 이번 여행이 좋은 추억으로 남기를 바라본다.



COVID-19 시대의 면역 강화를 위한 건강 보조 식품



해운대 부민병원 양명화
가정의학과 전문의/진료과장/국제진료센터장

제2형 중증 급성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 감염으로 인한 COVID-19는 2019년에 등장하여 2023년이 다가오는 지금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54%인 약 2,790만 명이 COVID-19에 감염된 경험이 있지만, 11월 말부터는 재감염 비율도 10%대 이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일반적으로 발열, 기침, 가래, 근육통 등의 증상 이외에도 COVID-19를 앓은 사람의 약 10%-75%는 질병의 급성기가 지난 후 몇 달 동안 '긴(long) COVID' 증상(피로, 근육 약화, 수면 장애 및 인지 기능 장애 등)을 경험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COVID-19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비타민, 미네랄, 기타 약제, 식이 보충제 성분의 사용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는 부족하지만, COVID-19 출현 후 면역 강화를 위한 식이 보조제품들의 관심과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여러 가지 제품들 중에서 미국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 of Health)이 제공하는 건강 보조식품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몇 가지 대표적인 성분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비타민(Vitamin) >

1. 비타민 C (Vitamin C)

비타민 C는 감귤류, 토마토, 감자, 피망, 키위, 브로콜리, 딸기 등에 풍부한 필수 영양소이며, 1일 권장 섭취량(Recommended Daily Allowance, RDA)은 금연 성인의 경우 75-120mg(최대 2,000mg/일)이며 흡연자는 하루에 35mg을 추가로 섭취하도록 권장합니다. 비타민 C는 항산화 효과, 항균 및 항 바이러스 작용, 바이러스 복제를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과거 연구에 의하면 정기적으로 200mg/일 이상의 비타민 C 보충제를 복용하면 감기의 지속 기간과 증상의 심각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현재 국립 보건원(NIH) COVID-19 치료 지침은 COVID-19가 아닌 다른 환자의 경우 패혈증, 급성 호흡 곤란 증후군 또는 폐렴이 있는 중 환자의 비타민 C 단독 혹은 다른 영양소 및 약물과 함께 정맥 주사하면 일부 증상이 개선되나, COVID-19 환자의 치료를 위한 사용은 아직 결론짓지 못했습니다. 과도한 비타민 C의 섭취는 위장장애, 과도한 철분 흡수, 알러지반응, 기타 약물과의 상호 작용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권장량 이내로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 비타민(Vitamin) >**2. 비타민D (Vitamin D)**

비타민D는 지방이 많은 생선(송어, 연어, 참치, 고등어 등), 소의 간, 치즈, 계란 노른자에 소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D의 1일 권장 섭취량은 성인의 경우 15~20mcg(600~800IU)입니다.

햇빛의 노출로 합성되는 비타민D는 자외선 차단제 없이 얼굴, 팔, 손, 다리에 매일 또는 최소 일주일에 두 번(특히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약 5~30분의 태양 노출을 할 경우 적정량을 합성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D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칼슘의 흡수와 뼈 건강에 대한 효과 외에도 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D는 바이러스 복제율을 낮추고 염증을 억제하여 감염에 대한 신체의 감수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일부 연구에 의하면 비타민D 보충제는 특히 25(OH)D 수치가 25nmol/L(10ng/mL) 미만인 사람들의 호흡기 감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며, 혈중 비타민D 수치가 낮을수록 COVID-19의 감염률 및 중증도가 높아진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 검진기관에서도 종합검진 항목으로 비타민D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따로 보조제를 섭취하지 않는 검진자에서 70~80% 정도가 결핍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비타민D 혈중 농도 기준을 20ng/mL로 할 경우 국내 남성 75.2%, 여성 82.5%가 비타민D 결핍이라고 합니다. 200명 이상의 과학자와 의사로 이루어진 공개 서한에서는 COVID-19를 예방하거나 증상을 줄이기 위해 혈청 25(OH)D 수준을 75nmol/L(30ng/mL)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25(OH)D 수치를 검사하지 않은 성인은 매일 50~100mcg(2,000~4,000IU)의 비타민D를 섭취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3. 비타민E (Vitamin E)

비타민E는 '알파 토크페롤'이라고도 하며 견과류, 씨앗, 식물성 기름 및 녹색 잎 채소에 존재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1일 권장 섭취량은 성인의 경우 15~19mg입니다. 비타민E는 세포막을 유지하고 항체 생산, 림프구 증식활동을 향상시켜 면역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항산화제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1~8개월 동안 고용량 비타민E(60~800mg/일)를 섭취한 60세 이상 성인에서 림프구 증식, 인터루킨-2 생산 및 자연 살해 세포 활동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OVID-19에 대한 연구는 비타민E 외에 다른 비타민 및 미네랄과 복합하여 진행된 연구만 있는 상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식품을 통한 모든 섭취 수준은 안전하며, 최대 1000mg/일까지 안전합니다.

< 미네랄(Mineral, 무기질) >**1. 아연 (Zinc)**

아연은 굴, 계,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콩, 견과류, 통곡물 및 유제품에 포함되어 있으며 1일 권장 섭취량은 성인에서 8~12mg입니다. 아연은 세포 대사에 관여하여 면역체계를 비롯한 여러 신체 과정에 관여합니다. 또한 항바이러스 및 항염증 특성이 있어 호흡기 상피 장벽의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아연 결핍은 림프구를 손상시켜 면역 기능을 저하시키고 특히 호흡기 질환에 대한 감수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 각국의 연구에서 혈청 아연 수치가 낮은 COVID-19 환자에서 회복이 더 오래 걸리며 사망률도 더 높았으며, 아연을 투약한 COVID-19 환자의 증상이 24시간 이내에 감소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NIH 치료 지침에 따르면 COVID-19 예방하기 위해 권장 섭취량 이상의 보충제를 복용하지는 말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2. 마그네슘 (Magnesium)

마그네슘은 녹색 잎 채소, 견과류, 씨앗 및 통곡물 등에 있는 필수 미네랄이며 1일 권장 섭취량은 성인의 경우 310~420mg입니다. 마그네슘은 600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의 보조 인자이며 면역반응, 혈압 조절, 심장 리듬에 관여합니다. 또한 항 혈전 및 기관지 확장 효과가 있으며 비타민D의 활성화에 필요한 요소로 천식 및 폐렴과 같은 호흡기 질환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몇몇 연구에서 COVID-19로 입원한 환자의 혈중 마그네슘 수치를 분석한 결과 약 반 정도에서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재원기간 동안 마그네슘 보충제를 투약한 환자군에서 산소요법이 필요하지 않거나 산소 포화도가 증가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식품을 통한 마그네슘 섭취는 전반적으로 모두 안전한 범위이며, 보충제로 섭취할 경우에는 최대 350mg/일까지 안전합니다.

3. 셀레늄 (Selenium)

셀레늄은 브라질 너트, 해산물, 육류, 가금류, 계란, 유제품 및 기타 곡물 제품을 포함한 여러 식품에 함유된 필수 미네랄이며 1일 권장 섭취량은 성인의 경우 55~70mcg입니다. 셀레늄은 면역체계를 도와 감염 위험을 감소시키고 항산화제로서 전신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 COVID-19 입원 환자는 일반 건강한 사람들에 비해 입원 시 셀레늄 상태가 낮았으며 이는 사망 위험의 증가와도 연관이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중환자(화상, 뇌출혈, 뇌혈관 질환, 수술 후 상태)군에서도 셀레늄 투약이 비투약군과 비교하여 낮은 사망율을 보였습니다.

<기타 보조 식품>

1. 인삼

인삼은 Panax속의 여러 종의 이름으로, 일반적으로 아시아 인삼 또는 고려 인삼이 있습니다. 인삼 사포닌(saponin) 혹은 진세노사이드(ginsenoside)라고도 알려진 트리테르펜 배당체(Triterpene glycosides)는 인삼의 주요 활성 성분 중 하나로, 인삼의 효능에 대한 연구는 주로 Rb1 진세노사이드를 중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물 및 실험실 연구에서 인삼은 면역 활성화 및 조절에 관여하여 바이러스 복제를 억제하고 항염증 작용을 나타냈습니다.

인삼의 섭취량은 하루 최대 2.5g 미만으로 권장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연구는 표준화 된 Panax 인삼 추출물을 하루 200mg의 용량으로 사용했으며 캡슐 제제는 일반적으로 하루에 100~600mg의 용량으로 섭취하였습니다. 인삼의 복용기간은 정해진 바 없으나 지속 복용 시에는 2~3주마다 2주간의 휴지 기간을 권장하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2. 오메가-3 지방산 (Omega 3 fatty acids)

오메가-3 지방산은 아마씨 및 지방이 많은 생선(연어, 고등어, 참치, 청어, 정어리 등)에 포함되어 있는 고도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성인의 경우 하루 1.1~1.6g 이내의 오메가-3 섭취가 권장됩니다. 오메가-3는 세포막의 구조를 형성하는 인지질의 구성 요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염증성 사이토카인 수치 감소 및 면역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영국, 미국 및 스웨덴의 연구에서는 최소 3개월 동안 일주일에 3회 이상 오메가-3 보충제를 복용한 군에서 COVID-19 감염 위험이 12% 낮게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COVID-19 환자군에서 14일 동안 1,000mg 오메가-3 보충제를 투약한 환자의 1개월 생존율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난 연구도 있었습니다.

3. 프로바이오틱스 (Probiotics)

프로바이오틱스는 주로 위장관에 작용하며 적절한 투여 시 숙주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살아있는 미생물로, 락토바실러스 에시도필러스, 락토바실러스 람노시스 등의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의 양은 생존 가능한 세포의 수를 나타내는 집락 형성 단위(CFU)로 측정하며, 일반적으로 1×10^9 (10억 CFU, 109 CFU) 및 1×10^{10} (100억 CFU 또는 1010 CFU)로 나타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발효 식품 또는 보충제 형태로 섭취할 수 있으며 효과로는 장벽 기능 향상, 면역 글로불린 생산 증가, 바이러스 복제 억제, 백혈구의 식세포 활성 향상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권장 복용량은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성인의 경우 하루에 10~200억 CFU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COVID-19로 입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12일 동안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한 환자군에서 설사, 발열,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COVID-19 감염 이후 피로 및 근육약화가 있는 성인에서 14일 동안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했을 때 미복용자에 비해 피로감이 감소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현재 COVID-19에 대한 절대적인 치료 방법은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면역을 향상시키고 염증을 줄여 COVID-19의 감염을 예방하거나, 감염되더라도 발생하는 증상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식이 보충 성분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추가적인 식이 보충제 형태의 섭취도 좋지만, 각각의 성분이 풍부한 식품 자체를 통한 성분의 섭취도 중요합니다. 유행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질환에 위험도뿐만 아니라 피로도도 점차 쌓여가고 있는 올 겨울에 조금이나마 연구가 진행된 성분들에 대하여 알아보고 향후 보조제를 선택하는 데 참고하시어 건강한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도급 분쟁 해법

1 원도급업체가 약속을 위반할 경우

병원 별관 신축공사를 발주받은 A사로부터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은 B사는 공사 진행 도중 수시로 설계변경 또는 대금 지급 문제, 심지어 현장관리자의 횡포로 다툼이 많아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이에 합의하에 타절하기로 하고 직접 공사 중 일부 미지급대금에 대해서는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하는 대신 B사로부터 터파기, 차수막, 가설재 설치 등을 (재)하도급받은 C, D사에 대한 B사의 미지급대금과 앞으로의 지급예정 금액에 대해서는 A사가 C, D사에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 그런데 A사는 약속을 위반하고 C, D사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C, D사는 B사가 자신들과 계약한 당사자이니 책임을 지라고 하면서 대금 지급을 독촉하고 있다.

전문가 답변 : 공사도급계약을 합의타절하면서 그동안의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B사가 모두 지급한 것으로 하고 그 대신 A사가 B사의 C, D사에 대한 채무를 직접 지급하기로 정산합의를 했다. 이 경우 A사와 B사의 의사는 정산합의 시점에서 확정적으로 B사의 기성금청구채권 포기의 효력이 생기도록 하고, 다만 A사가 C, D사에 대한 공사대금지급 등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것을 해제조건으로 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A사가 C, D사에 대해 약속한 공사대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면 당초의 A사와 B사 간의 합의는 해제조건이 성취, 즉 약속위반으로 처음부터 그런 합의는 없었던 것이 된다.

그러므로 B사는 C, D사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상당액을 B사 자신의 채권으로서 A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고 나아가 타절 당시 원만한 합의를 위해 사실상 미지급된 공사대금 일부를 양보하고 합의했기 때문에 이제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된 이상 그 양보한 일부 대금도 함께 A사에 청구할 수 있다.

[출처] 대한전문건설신문 - 황보윤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대표변호사



2 원도급 관계에서의 하도급법 적용 여부



A사는 공동주택의 시행 및 시공을 겸하는 회사이고, B사는 해당 공사 현장에서 A사로부터 미장, 방수 등의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전문건설사다. 그런데 B사는 해당 공사 준공 후 공사 잔금을 지급받지 못했고, A사의 '하도급법' 위반을 문제 삼았다. 그런데 이러한 원도급 관계에서 하도급법이 적용될 수 있는가?

전문가 답변 :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원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억제하고 수급사업자의 열악한 지위를 보완하며 하도급 관계가 상호보완적인 협조 관계에서 이루어지도록 유도함으로써 분업화와 전문화를 통한 생산성의 향상에 기여하도록 제정된 법률이 '하도급법'이다. 그런데 하도급법의 명칭에 비춰보면 하도급법은 '도급인(발주자)-수급인(원사업자)-하수급인(수급사업자)'의 관계가 형성돼 있는 경우, 즉 통상적인 '하도급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하도급법 제2조 제1항'은 일반적으로 흔히 하도급이라고 부르는 경우뿐만 아니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을 하는 경우도 하도급 거래로 규정해 그 법률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 제2항을 보면 그 법률의 적용 범위는 하도급 관계나 아니냐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원사업자의 규모에 의해 결정됨을 알 수 있으므로 하도급법은 그 명칭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하도급 관계뿐만 아니라 원도급 관계도 규제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0다61435 판결, 2001다27470 판결).

따라서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하도급 거래'란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하도급 관계'뿐만 아니라 '원도급 관계'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각 기업은 해당 거래 관계가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살피고 그에 따른 의무가 무엇인지 확인해 법 위반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출처] 대한전문건설신문 - 남상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부산 진출·입 전문건설업체 현황

2022. 10. 1. ~ 2022. 12. 31.

진출업체 현황
(주)녹색 (대표자:신길용, 경북)
(주)더조은 (대표자:황혜선, 경북)
(주)마징가건설 (대표자:권미경, 대전)
세암건설(주) (대표자:정운주, 울산)
(주)세웅개발 (대표자:강태화, 경남)
(주)에코테크 (대표자:박남태, 경남)
(주)유영토건 (대표자:이영돈, 경남)
(주)청민이앤씨 (대표자:이수빈, 경북)
한울조경(주) (대표자:이재용, 인천)

전입업체 현황
(주)경도그룹 (대표자:김연주, 대전)
(주)더난건설 (대표자:홍봉준, 제주)
덕산산업개발(주) (대표자:최학영, 울산)
(주)동남엘앤씨 (대표자:채경연, 경남)
유강토건(주) (대표자:김익래, 경북)
윤슬건설(주) (대표자:박언희, 경북)
(주)청민이앤씨 (대표자:이수빈, 경북)
케이알토건(주) (대표자:박한기, 충북)

부산 전문건설업체 등록 현황

2022. 12. 31. 기준

지역	업체 수	등록 수
중 구	29	49
동 구	66	101
서 구	29	32
사하구	91	134
영도구	27	41
동래구	210	258
남 구	121	161
금정구	276	391

지 역	업체 수	등록 수
연제구	158	219
해운대구	280	367
수영구	125	181
부산진구	174	238
북 구	99	124
사상구	141	173
강서구	280	374
기장군	220	310
합 계	2,326	3,153

부산 전문건설업체 상호 변경 현황

2022. 10. 1. ~ 2022. 12. 31.

변경 전
(주)네가코퍼레이션
무송건설(주)
(주)미강
(주)성훈건설
(주)씨디엠컴퍼니
(주)일흥토건
(주)태연토건
훈종합건설(주)

변경 후
(주)제이원산업
(주)가람토건
명가종합건설(주)
에이치원건설(주)
(주)본산업개발
(주)에스에스디개발
(주)동일토건
성훈건설(주)

부산 전문건설업체 대표자 변경 현황

2022. 10. 1. ~ 2022. 12. 31.

상호명	변경 전	변경 후
(주)가람토건	임명규	배혜주
(주)개림산업	윤석균	김정순
경원필드(주)	김무성,김용주	김무성
(주)고성관광개발	최경훈	박광환
규림건설(주)	박규림	윤석봉
극동건설(주)	문정동	문정동,허철영
(주)기탄건설	방기정	방주원
(주)대양산업건설	오종출	오종출,김진형
도하엘리베이터(주)	정태욱	김정민
동윤건설(주)	김동윤	한창훈
(주)동일토건	이정대	제시현
(주)무창건설	강신중	전미희
미도개발(주)	김남일	허영미
(주)범우컴퍼니	최정호	이혜진
(주)보스텍이앤씨	천동현	손재원
삼경건설(주)	최상희	고길순
상진토건(주)	여동희	강석진

상호명	변경 전	변경 후
성림종합건설(주)	안기용,안덕현	안상진,안덕현
송현건설중기(주)	김봉원	김새롬
(주)신보건설	박재형	박재형,조아람
(주)신흥건설산업	최미영	최문정
엔씨건설(주)	허경수	정광민
(주)엠앤제이플랜	원준호	우명화
예원건축(주)	김민주	조수연
(주)옥수산업	손옥수,박지훈	손옥수
(주)우주이앤씨	정민주	이석준
(주)웰디자인	박보경	이혜진
(주)유이이앤씨	장지원	장주성
정도이엔지(주)	윤만호	윤만호,도현경
조광건설(주)	김동윤	한창훈
(주)진도토건	권정옥	정목화
케이디건설환경(주)	문도용,박필욱	문도용,신일근
(주)케이플러스	공현준	김남중
(주)태극산업	김미경	임태성
한미피앤씨(주)	김영덕	김경수

부산시회 신규회원 현황

2022. 10. 1. ~ 2022. 12. 31.

 <p>그린업건축디자인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이대로284번길 2, 18동 1층 4호 (주례동, 럭키종합상가) T: 051-322-9818 보유업종: 실내건축공사업</p> <p>김진호</p>	 <p>미도개발(주)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산단1로 215, 5층 503호 (신호동) T: 051-973-6311 보유업종: 상·하수도설비공사업</p> <p>허영미</p>	 <p>엠엠케이(주)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로 1105-3 (대저1동) T: 051-256-5161 보유업종: 실내건축공사업</p> <p>이순덕</p>
 <p>(주)오성엘리베이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삼어로133번길 37, 1층, 2층 (반여동) T: 051-525-3401 보유업종: 승강기·삭도공사업</p> <p>오성탁</p>	 <p>(주)이음강건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신도시로 133, 802호 (화명동, 웨스트포인트) T: 051-323-2177 보유업종: 철강구조물공사업</p> <p>장은희</p>	 <p>일광조경협동조합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이천10길 18-1 1층 T: 051-723-5525 보유업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p> <p>서상</p>
 <p>지원건설(주)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00, 3층 (하단동, 씨티파크오피스텔) T: 051-271-1140 보유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p> <p>박영호</p>	 <p>(주)티에프디자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278, 3층(재송동) T: 051-324-1722 보유업종: 실내건축공사업</p> <p>박경민</p>	 <p>(주)하원이앤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69번길 29-12, 501호 (양정동) T: 051-868-4922 보유업종: 상·하수도설비공사업</p> <p>노재영</p>

KOSCA 중앙회 업무단신

윤학수 중앙회장이 지난 12월 19일 취임 직후 곧바로 대정부 정책 건의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앙회장은 12월 21일 서울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김상문 국장과 면담을 갖고 △건설업 상호시장 개방 불합리 개선 △불합리한 하도급 하자담보책임 개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존치 및 활성화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등 전문건설업계 현안을 건의했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합법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합법 외국인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시까지 불법 외국인 단속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상문 국장은 “공정한 건설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전문건설업계의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업무단신

전문건설공제조합이 12월 5일부터 보증서 이메일 발송 기능을 추가해 조합원의 업무 편의를 높였다.

기존에는 조합원이 인터넷으로 보증서를 발급하면 출력 기능을 이용해 파일로 저장하고 다시 이메일 등으로 발송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에 개선된 기능을 활용하면 보증서출력 화면에서 이메일 발송을 바로 선택할 수 있다. 출력 미리보기 화면에서 우편 모양 버튼을 누르면 이메일 주소 입력창이 나온다.

발송 후 수신자가 보증서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사업자 번호 10자리를 입력해야 하며, 이메일로 발송된 보증서는 위변조 방지 바코드는 없지만 조합 홈페이지 내 보증서 발급사실 조회가 가능, 좌측 하단 QR코드를 통해서도 진위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부산시회 2023년 1/4분기 주요일정 안내

일 자	주요일정	비 고
2023. 2. 2(목)	제38회 정기총회	
2023. 2. 15(수)	건설(전문)공사 실적신고 1차 접수 마감	
2023. 2월 말	4대 사회보험 및 노동관계법령 강습회(예정)	
2023. 3월 중	제1차 부산전문건설인 오찬세미나(예정)	
2023.3월 중	제1차 부산전문건설인 산행(예정)	
2023. 4. 14(월)	건설(전문)공사 실적신고 2차 접수 마감(재무제표(법인) 제출)	

※ 상기 일정은 협회 일정과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3년 건설업 교육 일정 안내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설교육센터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최고의 건설업 윤리 및 실무종합 교육기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에 근거하여 건설업을 신규로 등록한 자(건설사업자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한 경우 제외) 및 영업정지 기간 중인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건설업 신규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 미이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교육이수가 의무적이며, 영업정지기간 중인 건설업체의 경우는 동 교육 이수 시 영업정지기간이 최대 15일 감경될 수 있기에 교육이수가 권장된다.

2023년도 건설업 교육 일정 안내

01 교육대상

- **의무교육대상** : 신규건설 등록업체
 - 6개월 이내 등기임원(대표자 포함) 중 1인 교육 이수
 - **벌칙** : 6개월 이내 미이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 및 제99조
- **임의교육대상** : 영업정지 처분업체
 - 영업정지 기간 내 교육 이수
 - **감경기준** : 대표자 15일, 등기임원 1인당 5일 감경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

02 교육내용 및 비용

- **내용** : 건설산업관련법령(건설법·하도급법·계약법), 건설품질·환경·안전관리, 윤리경영
- **시간** : 8시간 (09:00~18:00)
- **교육비용** : 집합교육 150,000원 / 이러닝교육 135,000원

03 교육신청 및 결제방법

-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 및 교육비 결제 (신용카드, 계좌이체)**
 - 건설교육센터 <http://edu.kosca.or.kr> (팩스 02-3284-1066)
 - **입금계좌** : 기업은행 525-001144-04053 (예금주 (사)대한전문건설협회)
- **문의** : 건설교육센터 ☎ 02-3284-7076, 1080

04 2023년 온라인(이러닝)교육 일정(2~4월)

교육차수	신청마감일	학습가능 기간		비고
		부터	까지	
제3기	1.26	1.28	2. 3	
제4기	2. 2	2. 4	2.10	
제5기	2. 6	2. 8	2.14	
제6기	2. 9	2.11	2.17	
제7기	2.16	2.18	2.24	
제8기	2.23	2.25	3. 3	
제9기	3. 2	3. 4	3.10	
제10기	3. 9	3.11	3.17	
제11기	3.13	3.15	3.21	
제12기	3.23	3.25	3.31	
제13기	3.30	4. 1	4. 7	
제14기	4. 6	4. 8	4.14	
제15기	4.10	4.12	4.18	
제16기	4.20	4.22	4.28	

05 2023년 집합교육 일정(2~4월)

교육차수	교육일정	지역	장 소
제3기	02월 03일	광주	광주상공회의소(광주광역시 서구 대남대로 465지하, 1강의실)
제4기	02월 10일	대구	대구무역회관(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89, 4층 대회의실)
제5기	02월 14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 5길 15, 2층 중회의실)
제6기	02월 17일	대전	KT대전인재개발원(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 160, 제2연수관 109호)
제7기	02월 24일	전주	전주상공회의소(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7층 대회의실2)
제8기	03월 03일	순천	순천민국제습지센터(전남 순천시 국가정원1호길 7, 1층 입체영상관)
제9기	03월 10일	창원	대한적십자사경남지사(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26, 3층 나눔홀)
제10기	03월 17일	제주	제주상공회의소(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1길 18-4, 5층 국제회의장)
제11기	03월 21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 5길 15, 2층 중회의실)
제12기	03월 31일	천안	천안축구센터(충남 천안시 서북구 축구센터로 150, 2층 중세미나실)
제13기	04월 07일	수원	수원상공회의소(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11, 5층 중회의실)
제14기	04월 14일	부산	부산상공회의소(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 2층 중회의실)
제15기	04월 18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 5길 15, 2층 중회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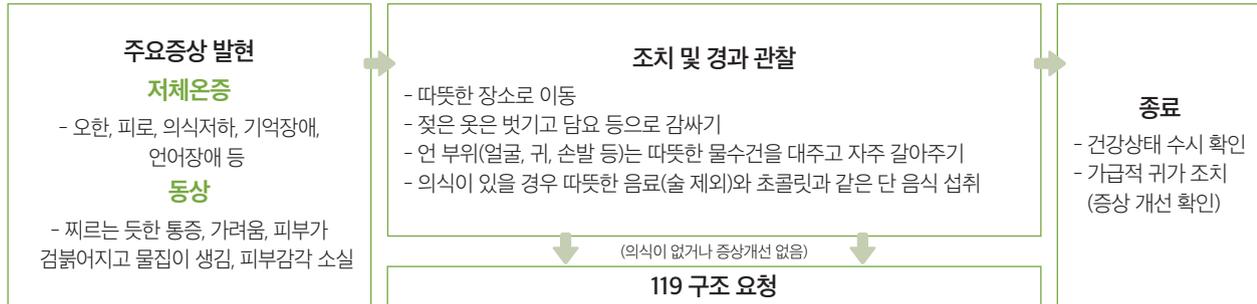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가이드

✓ 겨울철에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는 현상으로 동상,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한파 주의보**
-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C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C 이상 하강**하여 **3°C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C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한파 경보**
-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C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C 이상 하강**하여 **3°C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C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한랭질환 발현시 응급조치



※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한랭질환 종류 및 응급조치' 참고

✓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따뜻한 옷·물·장소!**가 기본 수칙입니다.

따뜻한 옷 (방한장구)

- 여러 겹의 옷을 입으세요.(3겹 이상의 옷은 보온성을 높여줍니다.)
 - 바깥층** 바람이나 물기를 막고 통기성을 갖춘 재질의 옷
 - 중간층** 젖더라도 보온성을 갖춘 재질의 옷
 - 안층** 땀을 제거하기 용이한 재질의 옷
- 모자 또는 두건을 착용하여 신체 열 손실을 줄이세요.
- 필요시 얼굴과 입을 가리는 마스크를 사용하세요.
- 보온장갑 및 보온 방수 기능이 있는 신발을 착용하세요.
 - 물에 젖기 쉬운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방수 기능이 추가된 장갑을 착용하세요.
 - 영하 7°C 이하에서 맨 손으로 금속 표면을 잡지 말고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세요.
- 물이나 땀에 젖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가능하다면 여분을 준비하세요.

따뜻한 물

- 따뜻한 물을 수시로 충분히 섭취하세요.

따뜻한 장소

- 작업자가 추위를 피해 쉴 수 있는 따뜻한 장소를 마련하세요.
 - 가급적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설치하되, 히터 등 난방장치는 화재나 유해가스 중독 등의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한파 시에는 항상 안전사고를 주의하세요!

✓ **작업자 건강보호**를 위해 추가적인 예방조치를 실시하세요!

- | | | | |
|-----------------------|------------------------------|------------------------|-------------------|
| 기상상황(한파특보·영향예보) 수시 확인 | 한파에 취약한 민감군에 대한 사전확인 및 수시 관리 | 혈액순환과 체온유지를 위한 스트레칭 실시 | 작업 시 동료 작업자간 상호관찰 |
|-----------------------|------------------------------|------------------------|-------------------|

✓ **한파 단계별 대응요령**

※ 지역별 한파 단계는 기상청 날씨누리 누리집(www.weather.go.kr) → 날씨 → 기상특보 → 영향예보 → '산업' 또는 날씨알리미(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통사항 (관심, 주의, 경고,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랭질환의 종류와 예방 방법, 증상, 응급조치 요령 등을 포함한 한랭질환 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 한랭질환 민감군(고혈압·당뇨·고령자 등)을 미리 확인합니다. • 추운 시간대 옥외작업을 최소화하도록 작업계획을 마련합니다. • 한파특보 전파, 건강이상자 보고 등을 위해 비상연락망을 준비합니다. • 따뜻한 옷(방한장구)·따뜻한 물·따뜻한 장소를 마련합니다. • 동료작업자간 건강상태를 상호관찰하고, 한랭질환 증상이 나타나면 작업을 멈추고 아래 응급조치 요령을 따릅니다.
주의 (한파주의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뜻한 옷과 방한장구 착용, 따뜻한 물 및 따뜻한 장소를 제공합니다. • 추운시간대에는 옥외작업을 가급적 최소화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운시간대 옥외작업시간 및 휴식시간 조정 등
경고 (한파경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뜻한 옷과 방한장구 착용, 따뜻한 물 및 따뜻한 장소를 제공합니다. • 추운시간대에는 옥외작업을 최소화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랭질환 민감군 및 중작업 수행 작업자 우선 고려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뜻한 옷과 방한장구 착용, 따뜻한 물 및 따뜻한 장소를 제공합니다. • 추운 시간대에는 옥외작업을 최소화하고 필요시 안전보건대책을 강구한 후 진행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랭질환 민감군 및 중작업 수행자는 추운시간대 재난, 안전 긴급조치 외 옥외작업 제한

* '중작업'은 열량소비가 많은 작업으로 삽·망치·톱·곡괭이·도끼를 이용하거나 건설현장에서 형틀·철근·타설 작업 등 전신을 움직이는 작업 또는 중량물을 수작업에 의해 반복적으로 들고 내리거나 취급하는 작업

✓ **한파에 의한 주요 재해사례**

- | | | |
|---|---|--|
|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4F8127; color: white; border-radius: 10px; margin-bottom: 5px;">쓰레기 수거작업</p> <p style="text-align: center;">방한, 방수가 되지 않는 장갑과 신발 착용한 채 작업 중 손발 동상 발생</p> |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4F8127; color: white; border-radius: 10px; margin-bottom: 5px;">건설현장 비계해체 작업 등</p> <p style="text-align: center;">야외 작업 중 손발 동상 발생</p> |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4F8127; color: white; border-radius: 10px; margin-bottom: 5px;">제설작업</p> <p style="text-align: center;">젖은 양말, 장갑 장시간 착용으로 손발 동상 발생</p> |
|---|---|--|

부산의 역사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아미동 비석문화마을

일제강점기 부산에 거주했던 일본인들의 공동묘지 위로
한국전쟁 피란민들이 삶의 터전을 꾸리며 만들어진
아미동 비석문화마을. 묘지의 비석이나 상석 등을
건축 자재로 삼아 집을 짓고 마을을 세운 이곳에는
지금도 부산과 대한민국의 역사가 고스란히 느껴진다.

글 조수진

부산광역시 서구 아미로 42 일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감천문화마을과 이어
지는 산복도로 마을. 바로 아미동 비석문화마을이다.

아미동 비석문화마을의 역사는 일제강점기로 거슬러 오른다. 일제강점기 당시 공
동묘지와 화장장이 들어선 아미산에는 영혼을 달래는 위령제가 자주 열렸고 그 제
물을 얻어먹기 위한 까치 떼가 몰려들어, 아미산 남쪽 산마루 부근을 '까치고개'라
불렀다고 한다.

일본인들의 공동묘지였던 아미동 산비탈은 해방 이후 방치되다가 한국전쟁으로
피란민들이 몰리면서 삶의 터전으로 재탄생했다. 한국전쟁 당시 인구가 폭발적으
로 증가한 부산에서 몇 안 되는 평지에는 이미 많은 집과 건물이 들어서 있었기 때
문이다.

삼삼오오 아미산으로 모여든 피란민들은 부족한 건축자재를 대신해 묘지의 비석
이나 상석 등을 집의 주춧돌이나 옹벽, 계단의 디딤돌 등으로 삼아 집을 지었고, 여
러 집이 모여며 자연스럽게 마을을 형성했다. 부산의 여러 산복도로 마을 중에서도
아미동 비석문화마을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메이지', '다이쇼' 등 일본식 연호가 적힌 비석·상석 등을 활용한 집의 일부나 마을
의 벽과 계단 등 부산 산복도로 마을의 특징과 지역성을 어느 곳보다 여실히 보여
주고 있는 아미동 비석문화마을.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
과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등으로 커뮤니티 시설이 건립되고 아미동 주민들의 마을
공동체가 활발히 운영되며 삶의 활기를 더하고 있다.

부산 서구는 2021년 6월 비석문화마을 초입에 위치한 9채의 집을 피란민과 산업
화 시대 서민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구멍가게와 이발소, 봉제 공간 등으로 바꾸어
전시공간 '피란 생활 박물관'을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부산시는 아미동 비석문화
마을을 첫 번째 시 등록문화재로 등재하는 등 아미동 비석문화마을은 역사적·건축
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과거의 역사를 품고 오늘을 넘어 희망찬 내일을 그리는 아미동 비석문화마을. 다가
오는 봄에는 따스한 햇살 아래, 과거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이어가고 있는 아미동
비석문화마을을 걸어보는 건 어떨까.

사진 아미동 비석문화마을 ©부산관광공사 VISIT BUSAN



천재 건축가 가우디의 걸작 구엘 공원

스페인의 수도인 마드리드만큼 널리 알려진 카탈루냐(Cataluña(스페인어), Catalonia(영어))의 바르셀로나(Barcelona), 스페인 제2의 도시이자 가장 큰 항구도시인 바르셀로나에는 전 세계인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이곳에는 천재 건축가 가우디의 환상적인 건축물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글 조수진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의 타라고나 주에 있는 레우스에서 태어난 ‘안토니 가우디 (Antoni Gaudí i Cornet, 1852~1926)’는 거대한 자연의 다양한 이미지에서 영감을 얻어 우아하면서도 독특한 곡선을 건축에 녹여낸 천재 건축가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최다 등록되었으며 미켈란젤로와 피카소에 견줄 수 있을 만큼 천재로 칭송받는 가우디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Basilica de la Sagrada Família), 까사 밀라(Casa Milà - La Pedrera), 까사 바트요(Casa Batlló), 콜로니아 구엘 성당(Iglesia de la Colònia Güell), 까사 비센스(Casa Vicens) 등 그야말로 위대한 작품들을 남겼다.

가우디의 수많은 작품 중 구엘 공원(Parc Güell)은 그의 후원자인 에우세비 구엘(Eusebi Güell)이 1900년경 이상적인 전원도시를 만들겠다는 꿈을 품고 가우디에게 설계를 의뢰해 지어진 공원이다. 바르셀로나 해변이 내려다보이는 기슭에 최고급 전원주택 단지를 지어 60여 곳을 분양할 계획이었으나 당시 도심에서 다소 멀리 떨어진 기슭에 위치한 값비싼 전원주택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구엘 공원은 재정적인 이유로 1914년까지 가우디가 기거하는 집을 포함한 건물 2채와 중앙광장, 타일 벤치 등만 지어진 채 방치되었다. 1922년 바르셀로나 시의회가 이 땅을 사들여 이듬해 시립공원으로 꾸며졌으며, 일반인에게 공개된 이래로 바르셀로나 시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된 구엘 공원은 가우디의 작품 가운데서 가장 화려한 색상을 가진 것으로 유명하다. 공원에서 가장 시선을 사로잡는 건물은 주 출입구로, 모자이크로 뒤덮인 외관이 독특해 ‘과자의 집’이라고도 불린다. 주 출입구를 통과하면 계단 중앙에 화려한 모자이크로 만들어진 2개의 분수대가 있는데, 분수대에는 연금술을 상징하는 도롱뇽과 의술의 신 아이스쿨라피우스를 상징하는 청동 뿔이 달린 뱀 머리가 조각되어 있다. 이 분수대는 구엘 공원을 대표하는 포토스꽃으로도 인기가. 광장으로 이어지는 독특한 모양의 경사 통로, 부서진 타일을 이용해 뱀처럼 돌아가는 모양으로 만들어진 광장의 벤치, 언덕을 감싸고 있는 구불구불한 구름다리(포르티코(현관 지붕) 등도 빼놓을 수 없는 명소다. 가우디가 거주했던 집은 현재 가우디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가 디자인한 가구나 사용했던 침대 등도 관람할 수 있다.



소통하는 문화공간

Healing Movie

잔잔한 여운과 따뜻한 감동을 남기는 영화는 매말랐던 감성을 풍부하게 만들어 생각을 환기시킨다. 잊고 있던 마음의 여유를 찾아줄 흥미롭고 감동적인 영화를 소개한다.



아바타: 물의 길

개봉 2022.12.14. | 감독 제임스 카메론

출연 조 셀다나, 샘 워싱턴, 시고니 우버, 우나 채플린, 지오바니 리비시, 스티븐 랭, 케이트 윈슬렛 등

월드와이드 역대 흥행 1위 <아바타> 시리즈, 13년만의 귀환

<아바타: 물의 길>은 전 세계 흥행순위 1위를 기록한 전편 <아바타>에 이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13년 만에 선보이는 영화다. 판도라 행성에서 제이크 설리와 네이티리가 이룬 가족이 겪게 되는 무자비한 위협과 살아남기 위해 떠나야 하는 긴 여정과 전투, 그들 가족이 견뎌내야 할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그려냈다. 이번 영화에서는 열대우림에서 바다로 배경을 옮겨 지구의 오랜 터전인 바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시대의 문제들도 다각도로 포착한다. 전편을 통해 3D 영화 기술을 시장에 도입한 제임스 카메론은 이번 영화에서 스쿠버 장비의 도움을 거의 받지 않은 새로운 수중 퍼포먼스 캡처 촬영 기법을 도입하여 관객들의 기대를 모았다.

영웅

개봉 2022.12.21. | 감독 윤제균

출연 정성화, 김고은, 나문희, 조재윤, 배정남, 이현우, 박진주 등

누가 죄인인가, 누가 영웅인가! 안중근, 뮤지컬을 넘어 영화로!

<영웅>은 대한민국 독립운동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한제국 의병대장 도마 안중근의 마지막 1년을 그린 영화다. 2009년 초연한 히트 뮤지컬 <영웅>에서 14년 동안 안중근 역으로 무대를 이끌어온 오리지널 캐스트 정성화가 영화에도 출연해 더욱 주목받았다. <영웅>은 한국영화 최초로 촬영 현장에서 배우가 직접 노래하는 라이브 녹음 방식을 채택하여, 스튜디오 녹음이 불가피한 일부 장면을 제외하고 70% 이상을 라이브 가창 버전으로 채웠다. 또한 황상준 음악감독이 오리지널 뮤지컬 넘버의 절반가량을 극장 환경에 맞춰 재편곡했으며, 오직 영화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넘버를 추가해 특별함을 더했다.



소통하는 문화공간

Healing Book



하루하루를 챗바퀴처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잠시나마 쉬어갈 수 있는 영혼의 안식처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톡톡이 읽을 만한 베스트셀러를 소개한다.
 ※ 베스트셀러 순위는 '알라딘'의 2022년 12월 5주 판매량과 주문 수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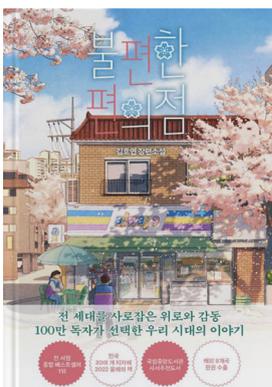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김혜남 | 메이븐 | 17,200원

저자 김혜남이 22년간 파킨슨병을 앓으면서도 유쾌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와 30년 동안 정신분석 전문의로 일하며 깨달은 인생의 비밀을 써내려간 심리학 도서다. 이 책은 2015년 『오늘 내가 사는 게 재미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출간한 책이 독자들과 사랑을 받으며 10만 부를 돌파한 베스트셀러가 된 것을 기념해 펴낸 스페셜 에디션으로, 환자들에게 미처 말하지 못했으나 꼭 전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담겨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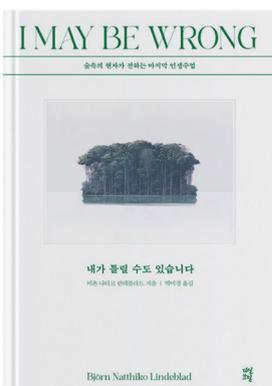


불편한 편의점



김호연 | 나무옆의자 | 14,000원

『불편한 편의점』은 청파동 골목 모퉁이에 자리 잡은 작은 편의점을 무대로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의 삶 속내와 희로애락을 따뜻하고 유머러스하게 담아낸 장편소설이다. 서울역에서 노숙인 생활을 하던 독고라는 남자가 어느 날 70대 여성의 지갑을 주워준 인연으로 그녀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책의 제목처럼 불편한 편의점이 고단한 삶을 위로하고 웃음을 나누는 특별한 공간으로 바뀌는 과정은 독자들에게 울림을 준다.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비온 나티코 린데블라드 | 다산초당 | 16,000원

20대에 눈부신 사회적 성공을 거뒀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숲속으로 17년간 수행을 떠났던 저자의 여정과 깨달음, 그리고 마지막을 담은 인문도서다. 회사를 그만두고 모든 재산을 나눠준 저자는 태국 밀림의 엄격한 계율에 따르는 숲속 사원에 귀의하고 '지혜가 자라는 사람'이라는 뜻의 법명 '나티코'가 되어 17년간의 수행 생활을 시작했다. 2018년 루게릭병을 진단받은 후에도 유쾌하고 따뜻한 지혜를 전한 저자는 수많은 스웨덴인들을 불안에서 끌어내어 평화와 고요로 이끌었다.

오늘보다 발전한 내일을 위해! 샐러던트saladent

2023년 계묘년(癸卯年)의 해가 밝았다. 새해를 맞아 검은 토끼처럼 힘차게 도약해 원하는 바를 모두 이루고 싶다면 주목해보자. 직장에 다니면서도 부지런히 공부하는 ‘샐러던트(saladent)’를 소개한다.

공부하는 직장인, 워라밸을 넘어 워라인을 확장하다!

샐러던트(saladent)는 직장인을 의미하는 샐러리맨(salaryman)과 학생을 의미하는 스튜던트(student)의 합성어로, 공부하는 직장인을 뜻한다. 이는 평생직업이 사라진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나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등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직장인들을 칭하는 말이다.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을 비롯하여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나 자율근무제 등의 확산으로 업무 유연성이 증가하면서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보다 생산적으로 활용하려는 직장인과 샐러던트도 증가하고 있다.

샐러던트를 위하여 출근 전 이른 새벽이나 퇴근 후 저녁·밤 시간 혹은 주말에 진행되는 각종 클래스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어학 수업이나 자격증 취득은 물론 학위 취득이나 관련 동아리·학회 등 모임 참가까지. 샐러던트의 활동은 온·오프라인을 넘어 배움의 열기로 가득하다.

업계에서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열중하는 샐러던트의 행보는 ‘워라벨(work-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을 뛰어넘은 ‘워라인(work-life integration; 일과 삶의 통합)’의 확장으로도 파악된다.

오늘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한 내일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는 샐러던트. 검은 토끼의 해에는 보다 높은 곳을 향해 도약하는 토끼처럼 부지런히 공부하는 샐러던트에 도전해보는 것은 어떨까.



미래를 위한 희망의 씨앗

지구 온도 1.5도

우리가 마시는 물이나 음식 혹은 물건의 온도가 1.5도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은 1.5도의 온도차를 감지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지구 온도가 1.5도 상승한다면 어떨까.



지구 온도 상승폭은 1.5도 이하로!

산업혁명은 우리 삶을 그야말로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18세기 영국의 방적기 개량에서 출발한 기술의 혁명은 사회, 경제, 정치 등 인류 문명의 변화로 이어졌다. 하지만 명(明)이 있으면 암(暗)도 있는 법. 산업혁명 이후 가정이나 공장에서 사용하는 화석연료는 대기 구성 성분에 영향을 주는 온실가스를 증가시켰고, 이로 인해 지금까지도 지구 온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21세기 말까지 추가적 온도 상승을 최소한 1.5도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중론이다. 지구 온도가 1.5도 상승하면 폭염과 해수면 상승, 홍수 등 심각한 기후위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2023년 1월에는 미국 카네기 멜런대 연구진이 미국과학진흥협회가 주관하는 과학 저널 『사이언스』에 지구 온난화를 막지 못하면 오는 2100년까지 육지 빙하의 2/3가 사라질 것이라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2.7℃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현재의 추세로는 오는 2100년까지 대륙 빙하 68%가 녹을 것이며, 녹은 빙하가 바다로 흘러 해수면은 115mm 높아지고 이에 따라 식수·농업용수 부족과 잦은 홍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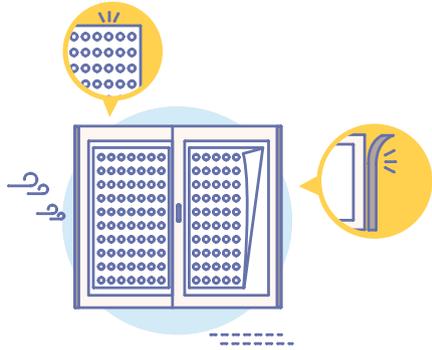
다수의 과학자들은 지구 온도의 상승 폭이 2도를 넘기면 재앙 수준의 급격한 지구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한다. 1970년대 유럽에서 언급된 기후변화의 한계점으로 여겨지는 온도는 2도였으나, 2010년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16차 당사국총회(COP16)에서 2도 제한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새로운 기준으로 1.5도를 처음 언급했다. 이후 2015년 파리에서 열린 제23차 당사국총회에서 상승폭을 2도보다 낮은 온도를 유지하고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전 세계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제시되었고, 이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실천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2018년 발표한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210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을 2도가 아니라 1.5도로 낮출 경우 지구에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먼저 해수면 상승이 10cm 낮아져 1,000만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 또한 곤충·식물·척추동물 등이 서식지를 잃는 피해가 절반으로 감소하고, 극심한 물부족에 노출되는 인구비율도 최대 50% 감소할 수 있다고 한다. 미래의 세대와 지구를 위한 지구 온도 상승폭 감소에 앞장서보자.

알아두면 쓸모 많은 유익한 생활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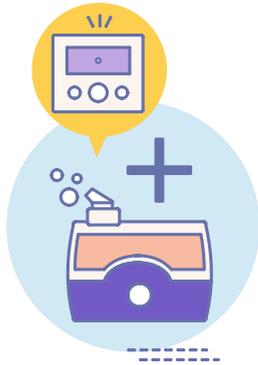
일상 생활에서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는 습기로운 생활 꿀팁을 소개한다.

겨울철 난방비 절약 TALK! TAL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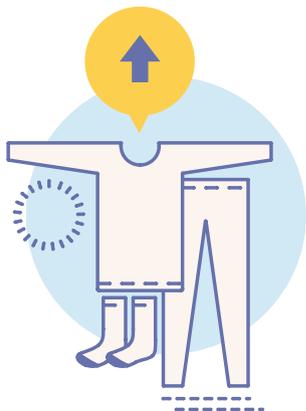
출입문·창문 틈새 냉기를 차단하자!

겨울철 난방비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냉기 차단이 필수다. 출입문이나 창문 등으로 새어 나가는 열은 평균 30%정도로, 실내 온도가 내려가는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틈새로 오가는 바람만 차단해도 실내 온도를 2~3도가량이나 높일 수 있다고 한다. 틈새 냉기를 차단할 경우 통상적으로 약 10~20%의 난방비가 절약된다. 천이나 비닐로 창문 틈새를 막거나 창문 틈새 바람막이를 설치하고, 커튼을 달면 새는 바람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유리에 뽁뽁이를 붙이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적정 습도와 난방기 위치를 확인하자!

습도를 40~60%로 유지하며 보일러를 가동할 경우, 공기 순환이 빨라져 실내 온도가 상승하고, 수분이 오랫동안 열을 머금어 난방 효율도 높아진다. 가슴기나 젖은 수건, 실내 식물 등으로 습도를 유지해보자. 적정 습도에서 히터, 온풍기 등 난방기를 사용할 경우 창문 가까이, 아래쪽에 두는 것이 좋다. 공기는 기온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창문 가까이, 아래쪽에 두고 사용하면 실내로 유입되는 찬 공기부터 데워져 내부에 골고루 온기를 퍼뜨릴 수 있다.



체감온도를 높이자!

실내에서 양말이나 덧신을 신고 담요를 덮거나 내복을 착용하여 체감온도를 높이는 방법도 난방비 절약팁에서 빼놓을 수 없다. 체감온도는 평균적으로 양말을 신으면 0.6도, 담요를 덮으면 2도, 내복을 입으면 3도 정도 상승한다. 실내온도가 다소 낮더라도 체감온도가 낮으면 난방비를 10% 이상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 뜨거운 물을 넣은 물주머니를 활용하는 것 역시 체온을 올리는 데 효과적이다. 잠들기 전 미리 이불 속에 물주머니를 넣어두거나 수건이나 담요 등으로 감싸 안고 자면 난로나 전기장판 등 난방기기 사용도 줄일 수 있다.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만큼 매일 섭취하는 음식도 중요하다. 체내에서 필요한 양질의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 필요한 건강음식을 살펴보자.



건강한 초록빛 한 모금 녹차

건강한 슈퍼푸드 녹차

녹차(綠茶, green tea)는 타임지가 선정한 슈퍼푸드에 손꼽힐 만큼 건강한 녹색 음식을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산지가 중국으로 알려진 차(茶)나무는 후피향(厚皮香) 나무과에 속하는 상록활엽관목이다. 잎은 차로, 열매는 착유해서 기름으로, 줄기는 단추감으로 이용된다. 중국인들이 차를 즐긴 시기는 당·송나라 이후로 추정되며, 신라와 일본에도 이때 차가 전해졌다고 한다. 기록상 우리나라에 차가 처음으로 전래된 것은 신라 27대 선덕왕 때이며, 차 종자가 처음으로 파종된 것은 신라 42대 흥덕왕 3년(828년)이다.

차의 종류는 찻잎의 발효(醱酵) 여부에 따라 크게 녹차, 오롱차, 홍차 등으로 구분된다. 녹차는 채취한 신선한 찻잎을 고온 가열하여 잎 속의 산화효소의 작용을 억제시킨 후 비비고 말리고 정제하는 등의 가공을 거쳐 만들어진다.

카테킨이 풍부한 그린푸드

녹차를 자주 마시면 혈전 형성을 예방하고 콜레스테롤과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또한 충치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한다. 무엇보다 녹차가 건강음식으로 거론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항산화 작용에 뛰어난 카테킨(catechin)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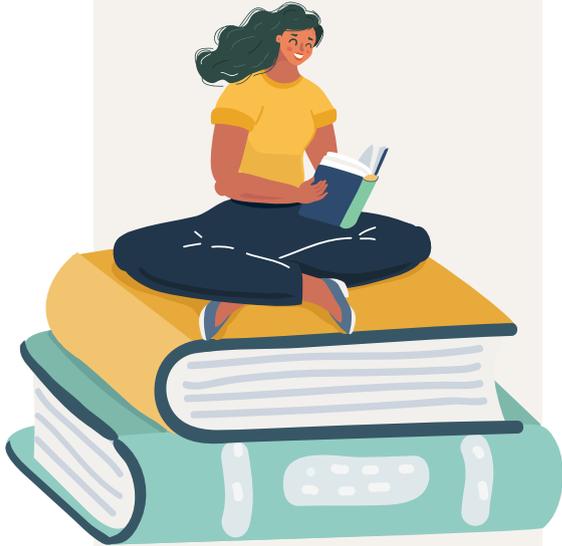
카테킨은 항산화 작용을 하는 폴리페놀(polyphenol)의 한 종류로, 녹차의 씹새로운 맛도 카테킨의 탄닌(tannin) 성분 때문이다. 녹차 한 잔에는 대략 100mg의 카테킨이 들어 있으며, 그중 가장 강력한 성분인 'EGCG'는 비타민C보다 항산화 효능이 20배나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녹차의 카테킨 등 폴리페놀 성분은 항산화 작용을 하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춘다. 뿐만 아니라 녹차에는 카페인(3%), 탄닌, 테아닌, 세키세놀, 비타민C(150~500mg), 비타민 B1, B2, 나이아신, 펜토텐산, 이노시톨, 루틴 등이 함유되어 있어 건강에 이롭다.

차나무에서 첫 번째로 딴 잎으로 만든 '우전'에는 특히 테아닌(theanine)이 풍부하다. 또한 혈압이 높은 사람은 세작(4월에 나오는 차)보다 중작(5월에 나오는 차)을 마시는 것이 더 좋다.



코스카레터를 읽고...



코스카레터 잘 읽으셨나요?

**Quiz를 풀고
정답을 맞춰주세요~**

지난 호 독자퀴즈 정답

20억원 이상

지난 호 독자퀴즈 정답자 발표

(주)해도 이은진 사원

(주)청호토건 이현정 대리

(주)송정건설 **정지은** 과장



코스카레터를 읽으면서 업무 중에 휴식을 취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 외 뉴스, 인포, 투데이를 통해 원래 알던 지식도 한번 더 확인할 수 있고, 몰랐던 정보도 확인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매번 잘 보고 있습니다.

(주)영진엘리베이터 **한진실** 사원



최근 개정된 법령과 정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게 정리되어 있어 업무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소통하는 문화공간을 통해 책이나 영화 정보도 볼수 있어 지루하지 않게 잘 챙겨 보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항상 발전하는 코스카레터를 기대하겠습니다.

코스카레터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나, 아쉬웠던 부분,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다뤘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독자의견은 메일(kosca21@kosca.or.kr)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독자의견을 보내주시신 분께는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상품**(문화상품권 등)을 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Q 2022. 12. 20.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이 개정·고시되어 기존 건설사고 발생시 2시간 이내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에 통보토록 되어 있던 사고신고기준이 2023. 1. 1.부터 완화되었습니다.

개정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서는 사고발생 인지후 몇시간 이내 통보토록 개정되었을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협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팝업창을 통해 **2023. 2. 28 (화)까지** 응모하시면 추첨하여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 정답자에 한해 추첨 증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향령대로30번길 30, 4층(범천동, 전문건설회관)

Tel. 051-633-0260 Fax. 051-633-0261

www.kosca21.or.kr